

되지 않는 저개발의 한 형태를 이룬다는 것이다.

중국의 모든 인권위반이 국가정책의 필요 때문에 수행되거나 옹호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만이(가령, 정치적 반대자의 수감) 그런 경향이 있다. 다른 경우에 중국이 선언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입장과 정부의 실제 성과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다. 종종 중국의 국제적 태도는 외교정책 당국이 공안, 내무, 사회복지와 같은 국내 정책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하급 관료들은 지적 재산권, 시장 접근, 혹은 무기 확산 분야의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 대표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만은 아니다.

## 2.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sup>10)</sup>

인권은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장기적인 주제이다. 초창기부터 중국인민공화국(PRC)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1950, 60년대에 중국은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고 주권 및 자결권을 강조하였으며, 그 위반자로서 미국, 프랑스,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남베트남을 겨냥하였다. 1955년에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유엔헌장이 발표될 당시 인권의 근본 원칙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에 공동으로 적용될 기준으로서 세계 인권선언에 주목 한다”고 진술한 반동회의의 최종성명서에 동의했다.<sup>11)</sup> 1960, 70년대의 인권상황은 중국이 소련을 신랄히 비판하던 모습이 지배적이었다. 《인민일보》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국가의 이해를 침해하려는 사람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소련의 헌법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헌법은 면밀하게 모범이 되었다 — 을 비난하였다.<sup>12)</sup>

중국은 1971년 유엔 가입 이후에야 비로소 인권 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9년에 중국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옵서버로서 참석하

다가 1982년에는 그 위원회에 가입하였다. 또한 중국은 소수집단 차별 예방 및 보호 소위원회, 토착민, 통신의 인권 측면, 아동의 권리, 아주 노동자의 권리, 고문 등에 관련된 유엔 실무단에도 참여하였다. 중국은 다른 제3 세계 국가들과 함께 ‘개발권’을 촉진하였는데, 1986년에 그 권리는 유엔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중국 대표는 아프가니스탄, 칠레, 이스라엘 등에서 인권 위반에 관한 유엔의 감시와 인권에 기초한 다른 목표들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이 다른 국가의 인권외교에서 주요 표적이 된 계기는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냉담한 외교적 반응을 보였고 문화적 교류도 취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쌍무적 원조 및 차관의 동결, 세계은행과 아시아은행 차관의 일시적 지급 정지, 군사적 거래와 유대관계의 청산 등을 포함하여 각종의 제재들도 뒤따랐다. 그러나 서면상으로 남아 있는 미국의 일부 사소한 제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제재들은 1990년대에 없어졌다.<sup>13)</sup> 제재가 줄어들자 서구의 정부들과 정치가들은 구두상으로라도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느꼈다.<sup>14)</sup> 이에 따라 1991년 이후 인권과 관련한 공식 및 민간 사절단의 주요 인사들의 행렬이 끊이질 않았다. 여기에는 프랑스 수상, 일본 수상,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사절단, 미국 의회 사절단, EC 사절단, 폴란드 외무부 장관, 캐나다 의회 사절단, 티베트를 방문한 EC 대사관 사절단, 독일 콜 수상 등이 있다.

산업화된 국가들은 반체제 인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고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객원 학자와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1989년 이후 신용평가, 외국인 투자, 수출신용장, 관광 등에서 2년 간 침체를 경험했다. 1989년에서 1994년 내내 중국은 미국과 정상무역을 재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라는 미국 국민과 의회의 열망에 의해 매년 위협을 받았다. 1993년에는 2000년 올림픽을 주관하려는 베이징의 시도가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반대에 직면하여 좌초되었다.

중국은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로부터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1989년 8월에 소수집단 차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영구회원국 가운데 한 회원국이 인권현황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고 중국을 조심스레 비판하는 결의안을 비밀투표로 채택했다. 인권소위원회도 1990년 회기중에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고려하였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미국이 걸프전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지지를 필요로 하던 1991년에는 그 어떤 결의안도 제안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매년 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매번 중국이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그 결의안은 기각되기 일쑤였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유엔 종교탄압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단, 즉결 및 자의적 집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에 반대하는 위원회,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단 등의 보고서나 회합에서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1996년에 유엔의 고문에 반대하는 위원회는 NGO 보고서를 심리한 후 중국에 대해 공개처형을 중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며, 경찰 만행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같은 해 유엔 아동인권위원회는 여아 살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중국에 촉구하였고, 국립고아원의 높은 사망률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인권문제는 다른 쟁점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협상 지위에도 간접적인 손해를 주었다. 중국-미국 관계에서 천안문 사태는 불리한 교역조건과 결합되었다. 무기 수출도 그간 중국이 우선적 쟁점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던 대만 문제를 미국이 쌍무적 의제로 취급하여 중국의 입장에 불리한 반베이징 정서를 고조시켰다. 사실 대만 문제는 1995년까지 적어도 공식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반중국 분위기는 지적 재산권과 시장 접근에 관한 회담에서 베이징의 협상지위도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두 협상 모두에서 무역제재 위협에 직면하여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중국은 인권에 대해 수세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만으로 이동하는 미국과 프랑스 군대를 봉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왜 홍콩의 민주화 쟁점에 대해 회유적인 태도를 지닌 홍콩 총독이 베이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 총독으로 교체되었는지를 설

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천안문 사태가 국제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나라는 홍콩과 대만인데, 홍콩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대만에서는 독립의 정서에 박차를 가하였다.

국제적 인권압력에 대한 베이징의 반응은 현실주의, 충당지도부의 조정능력, 전략적 일관성, 전술적 유연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저항하다가, 또 다른 정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보의 자세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들을 다면적으로 구사한 것은 다자간 환경 속에서 제3세계의 지원을 규합하는 동시에 서구의 현실주의 정치(*realpolitik*)의 옹호자들에게 호소하고, 인권옹호자들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비판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데올로기적 반격을 시작하였다. 우선 공식 대변인은 일련의 애매한 기준(*double standard*)을 제시하여 외국의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가령, 몇 가지 측면에서 인권상황이 더 열악한 다른 나라들(가령 이스라엘, 인도)이 무시되는 대신 중국이 그 비판을 대신 받고 있다든지, 모택동의 위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등소평하에 심각성이 덜한 위반에 대해서는 불평한다는 지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미 번역할 대로 번영한 서구인들은 이제 도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근대적인 기준을 즉시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서양도 비판하고 있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인권을 위반하고 있거나 심지어 비판하고 있는 나라보다 더 개탄할 만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말하자면 서양은 특정한 문제들을 비판함으로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널리 유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결국 서구의 진정한 동기가 자신을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단언했다.

둘째, 중국의 대변인은 문화적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인권에 관해 어떤 문화적 개념이 다른 문화적 개념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대변인은 외국인들이 인권위반으로 간주하는 문제들이 중국의 국

내법상의 문제이며, 만일 그 문제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중국 정부가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주권의 쟁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국의 인권 현황이 적어도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생존 및 개발권은 서구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잘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권리는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더 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말레이시아의 수상 모하메드 마티에르(Mohammed Mahathir)와 싱가포르의 전 수상 李光耀(Lee Kuan Yew)와 같은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동시에 이러한 문화적 상대주의, 이중적 기준, 민족주권 등의 주장은 도덕적 외교정책이 정당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고 믿고 있는 미국의 현실주의 학파(realist school)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중국은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는 정부와 협력하여 외교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대외 홍보사업도 수행하였다. 가령, 1990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은 소련이나 유고, 쿠바, 그리고 이 회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로부터 지지나 기권을 얻어냄으로써, 중국의 인권문제를 처리하는 안건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또한 중국은 1990년 인권위원회에서 천안문 사태와 같은 주요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비상기구를 설치하려는 서구의 발의를 차단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1992년에는 유엔의 고문특별보고관의 위임사항을 제한하고자 필리핀과 시리아와 제휴하였다.

중국은 1990년에 시작하여 유엔 후원하에 1993년 6월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 의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였다.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예비회합에서 중국은 중국이 선호하는 몇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유엔 인권사업의 의제가 확립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9개국 대표들 가운데 38개국으로부터 협력을 얻어냈다. 이러한 원칙으로는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비간섭의 원칙, 유엔 기구들이 특정 국가를 선별하여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개발권의 개념을 둘러싼 집단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원칙, 국민주권의 원칙,

지역마다 인권은 보편적이기보다는 문화적으로 특수하다는 원칙 등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수사적, 외교적으로는 인권간섭에 반대했지만, 동시에 선택적으로 강경책을 결합시켜 몇 가지 양보조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보조치의 실제 예로는 미국 의회에서 정죄법의 석방이 MFN 정치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인 1990~91년의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베이징은 전체적으로 약 881명의 천안문 사건의 죄수들을 세 차례에 걸쳐 석방하였다. 또한 베이징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方勵之(Fang Lizhi)가 유엔 대사관을 통해 해외로 망명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미국과 인권대화를 재개하는 데 동의했고, 미국무성의 제임스 베이커에게 정치적 이유로 중국 시민의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약속하였다. 다음해인 1991년에는 옥사할 위험에 처한 韓東防(Han Dongfang)을 석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魏京生, 王軍濤(Wang Juntao), 陳子民(Chen Ziming)과 같은 비타협적인 죄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처우도 개선하였다. 계속해서 그들 모두를 석방하였고, 王軍濤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해 조국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1992년과 1994년에 중국은 미국으로 죄수 노동생산물의 수출을 제약하는 이해각서에 미국과 함께 서명했다. 1993년과 1994년에 미국 죄체국대우(MFN)의 결정에 따라 베이징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정치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죄수의 면회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심사였던 반체제 인사들과 정치적 추방자들의 가족들에게 해외여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하였다.

베이징은 또한 인권이 국제적 대화의 타당한 주제라는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중국은 대화에 참여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1991~92년에 걸쳐 두 차례 인권사절단을 서구에 파견하였다. 1991년에 국가위원회는 〈제 1차 인권백서〉를 발간하였고, 〈형법에 관한 백서〉(1992), 〈티베트 인권상황〉(1992), 〈가족계획〉(1995), 〈제 2 차 인권백서〉(1995), 〈아동의 권리〉(1996)가 그 뒤를 이었다. 비록 그 어조는 일반적으로 유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문서들은 국제적 관심에 반응하려는 신호로

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인권체제가 각 국가를 결속하는 성격에 대해 정부의 성명서는 점차 긍정적인 어조로 변화되어 갔다.

국제적 압력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아마도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취하지 않았던 조치들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전의 조치들과 비교하여 볼 때 1989년 이후 감금된 많은 반대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되었다. 그리고 1989년 시위와 관련하여 사형이나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세계에 의해 무시된, 대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노동자들과 지식인들과 같은 죄수들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이미 예견된 대내적, 대외적 반응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그럴싸하다.

정부는 그 비판가들을 분할시키는 방식으로 양보조치를 취하였다. 죄수의 노동생산물 문제는 일본의 수상 도시키 가이후(Toshiki Kaifu)와 친 MFN계 미국인 사업가 존 캄(John Kamm)의 호의적이고 깔끔한 중재로 적절히 매듭지어졌다. 중국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선 것은 1990년에 세계은행이 지급을 재개한 것이라든지, 제3엔화 패키지를 통해 일본이 대출을 재개한 것, 그리고 MFN에 대한 취소나 조건을 부가하려는 의회 비판가들에 대해 부시가 반대한 것 등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비록 중국이 공적인 압력보다는 은밀한 외교에 더 잘 반응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외교방식도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있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외교적 압력에 대한 양보가 대개는 개별 사례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수사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주로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양보도 결국 법률 개정과 같이 더 근본적인 내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모택동 사후 법률체계는 1979년 형법 및 다른 법률의 공포와 함께 구축되었다. 그것은 1994년 감옥법의 채택과 1996년 형사절차법의 개정과 같은 노력으로 계속되었다. 사실 법률체계에서 변화란 주로 근대적인 예측 가능한 행정에 대한 필요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는 그다지 현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의 강화, 법률 전문직의 육성, 전국인민 대의원회(National People's Congress)로의 점차적인 권한 이행, 마을단위의 경쟁적 선거의 도입 등에 연결되어 인권상황을 크게 개선한 것이 사실

이다.<sup>15)</sup>

외교적 압력은 내적인 강제와 더불어 행사되지 않는다면 그다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외부 행위자들의 지지가 없다면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의 압력 또한 중국을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외부의 지지는 어떤 경우에 교육 및 훈련비용의 원조를 통해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부족한 측면에 관심을 갖도록 중국 지도자에게 소리 높여 말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내·외적 압력 모두는 서양에서 법률훈련을 받은 정책자문가가 중국의 정책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내·외부 지지자들이 옹호하는 개혁들로는 사형의 폐지, 혁명반대죄의 종결, 무죄 추정의 인정, 더욱 확고한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보장, 피고측 변호인들에 대한 형사피고인들의 용이한 접근, 행정적 구금의 폐지, 죄수들에 대한 경찰권 남용의 처벌, 사법부 독립의 개선, 두 국제인권규약 가입 등을 포함한다. 외부의 비판은 처음에는 국내의 전문가들에게 이들 쟁점에 관심을 갖도록 문제제기하고 나아가 전문적 의견을 추구하도록 정책결정자들에게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한 내부의 논쟁과 변화를 보면 중국에는 인권개념의 문화적 뿌리가 없다는 종종 제기되는 주장이 쉽게 반박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을 보면 중국의 법률가, 학자, 언론인,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인권의 보편성, 법률에 의해 의무가 지워진 국제인권체제의 상황,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했던 중국의 지혜 등이 드러난다.

인권 쟁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특수한 쟁점에 대해서는 강경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아마도 해외에서 가장 우선적 문제로 취급되는 정치범 魏京生을 비롯하여 다른 잘 알려진 죄수들은 수년간 국제적 압력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할 정도로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2000년에 올림픽을 주관하려는 베이징의 캠페인 일환으로 1993년에 석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클린턴 대통령이 최혜국대우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몇 주 전에 그의 보조관 통이(Tong Yi)와 함께 다시 구속되었다. 구속된 이후에는 장기형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외부세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희생자들과 王軍濤, 陳子民과 같이 그 본보기가 되는 정치범에 대해서도 장기형이 선고되었다. 1992년 11월에 중국은 대만에 F-16기를 판매한 것에 항의하고 새로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인권쟁점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이처럼 중국이 강경조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한 사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인권압력이 과연 생산적인가에 대해 서구에서 정책논쟁이 계속되었다.

인권양보정책은 클린턴이 1994년에 최혜국대우와 인권문제를 서로 분리한 후에 구두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모두 지연되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후퇴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당국은 魏京生, 陳子民, 王丹(Wang Dan), 劉曉波(Liu Xiaobo)와 다른 민주인사들을 다시 체포하였고,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수감자 면회에 대한 대화도 중지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 인권대화 또한 그 횟수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내용도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1995년 9월 베이징 여성회의에서는 출석자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티베트, 신양, 몽고에 대한 억압도 다시 강화하였다.

미국이 인권쟁점에 대한 중국의 강경조치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들은 많다. 최혜국대우를 다른 신뢰할 만한 압력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든지, '포괄적 관여'(comprehensive engagement)의 슬로건을 채택했다든지, 중국과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무성 장관 론 브라운(Ron Brown)과 에너지 장관 해젤 오닐(Hazel O'Leary) 및 이외 몇몇 사람들을 급파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러한 예들이다. 이에 더해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였다든지, 1995년 강택민과의 정상회담에서 클리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던 것 등도 단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서구에서 이 쟁점은 당분간 그다지 중요한 쟁점은 아니며, 상업적·외교적으로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베이징의 능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외교적 사건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으로는 魏京生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것, 1995년 중국의 방문 동안 헬무트 콜 수상이 인권문제를 별반 준비없이 취급했던 것, 일본이 인권문제

가 아니라 핵무기 시험과 연결하여 거대 원조를 중지했던 것, 런던이 홍콩에서 인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캐리스 패튼을 지지하는 데 실패한 것 등이 포함된다. 1996년 미국정책이 '전략적 대화'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과 서구의 대중국 정책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지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주]

- \* 이 글은 Andrew J. Nathan,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China Quarterly*, 139(December 1994), pp. 622~643에서 발췌한 글이다. 동일한 자료 중 일부는 James R. Lilley와 Wendell L. Willkie가 편집한 책 *Beyond MFN : Trade with China and American Interests*(Washington, D. C. : AEI Press, 1994), pp. 77~90에 "MFN and the Human Rights Issue"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각각의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자료들은 여기에는 요약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상당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셈이다. 나는 논평과 비평에 대해 Task Force의 구성원들 이외에도 Joanne Bauer, Peter Geithner, Mike Jendrzejczyk, Sidney Jones, Bruce Malkin, 그리고 James D. Seymour 등에게도 감사한다.
- 1) 대부분의 문헌은 내가 *China Quarterly*에 쓴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글들이 쓰여진 이후 구한 몇몇 최신 자료들로 보완하였다.
- 2) 강제추방에 대해서는 Human Rights Watch / Asia and Human Rights in China, "China : Enforced Exile of Dissidents"(New York, January 1995)를 볼 것.
- 3) Tibet Information Network and Human Rights Watch / Asia, *Cutting Off the E\ Serpent's Head : Tightening Control in Tibet*, 1994~1995(New York: Human Rights Watch, 1996).
- 4) HRW / A, "China : Religious Persecution Persists," December 1995.
- 5) Human Rights Watch / Asia, "The Three Gorges Dam in China : Forced Resettlement, Suppression of Dissent and Labor Rights Concern"(New York: HRW / A, February 1995).

- 6) Human Rights Watch / Asia, "China : Organ Procurement and Judicial Execution in China" (New York: HRW / A, August 1994).
- 7) Human Rights Watch / Asia, *Death By Default : A Policy of Fatal Neglect in China's State Orphanages* (New York: HRW / A, January 7, 1996).
- 8) Dorothy Solinger, paper for Carnegie Council project, CITE TK.
- 9) Sidney Jones, "Indivisible Human Rights," CITE TK ; Amartya Sen, CITE TK.
- 10) James D. Seymour, "Human Rights in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Samuel S. Kim, *China and the World*, Third Ed. (Boulder: Westview, 1994), Ch. 10.
- 11) NCNA, Bandung, April 24, 1955, in SCMP, No. 1033, April 23~25, 1955, p. 14.
- 12) *Renmin ribao*, June 13, 1978, p. 6 ; *China News Analysis*, No. 1114 (March 24, 1978), p. 6에서 인용.
-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James D. Seymour, "Human Rights and the World Response to the 1989 Crackdown in China," *China Information*, 4 : 4 (Spring 1990), pp. 1~14 볼 것.
- 14) Dianne E. Rennack, "China : U.S. Economic Sanc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y 1, 1996.
- 15) Ronald C. Keith, *China's Struggle for the Rule of Law*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 Stanley Lubman, "Introduction : The Future of Chinese Law," *The China Quarterly*, 141 (March 1995), pp. 1~21 ; Andrew J. Nathan, "China's Constitutional Option," *Journal of Democracy* (October 1996), pp. TK ~TK.

## 세대간의 정의와 대만의 반핵운동\*

### 말 후망

#### 1. 서 론

이 글은 환경보호연합(Environment Protection Union, 이하 연합)의 지난 십년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대만의 반핵운동을 다룰 것이다. 특히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질문과 관계된다. ① 정부는 왜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여 왔는가? 그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추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② 도시 지역의 지식인들

\* 黃默 (Mab Huang) : 대만 수초 (Soochow) 대학 정치학 교수 (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박사학위 취득. 주요 논문으로 "Human Rights in a Revolutionary Society : The Ca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ty Years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등이 있다. 여기에 실린 글은 그의 논문, "Justice Between Generations and the Anti-Nuclear Movement in Taiwan"의 일부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업석진이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가졌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졌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우려, 이 양자가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③ 환경보호를 위한 지금까지의 오랜 투쟁이 이루어 놓은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십 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래 논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가 맞물리는 역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보고서에서 단지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과 기술만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여성운동, 노동운동과 같은 다른 사회운동과는 달리 반핵운동은 환경과 개발의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만 국민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누려 왔는가? 그리고 개발에 대한 권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개발은 어떠한 성격의 개발인가? 국제법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와 같은 새로운 인권이 국제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많은 논의들을 포괄하면서 이 문제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세대간의 정의(justice)에 관한 지형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정치철학의 새로운 도전이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만의 반핵운동은 다른 나라의 반핵운동과 마찬가지로 세대간의 정의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 위에 놓여 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다음 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도덕적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또 많은 관련된 질문들은 몇 년 간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시론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들을 명확히 기술해 보려 한다.

## 2. 대만의 반핵운동

1996년 5월 24일. 그날은 의회에서는 비열한 정치적 암투가, 사회에서는 경찰과 군중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 끝나는 날이었다. 국민당과 두 야당—민주진보당과 신당—은 이번 표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의원들까지 들것에 의지하여 투표하게 할 만큼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결국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당 내의 분열로 인해 국민당은 패배하였다. 그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 제4호기의 건설 중단을 포함한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금지 결의안이다.

단순히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금지 결의안의 채택은 정부에 대항하여 장기간 끌어온 투쟁의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합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였을 뿐이었다. 정부는 그 다음날 즉시 그 결의안의 폐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정부는 결의안을 폐지하기 위해 입법의원 전체의 3분의 1의 지지만 확보하면 된다. 투쟁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1964년부터 원자력 발전의 개발과 사용은 대만 전력회사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85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가동되었다. 이 발전소들은 대만의 전력생산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북부 해안지역의 작은 어촌인 貢寮(Gong-liao)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건설을 계획해 놓았다. 그리고 이 곳은 다가올 몇 년 동안 대립의 장이 된다.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건설계획은 초기부터 반대와 도전에 직면하였다. 1985년에는 입법원(Legislative Yuan)과 감찰원(Censorial Yuan)의 몇몇 의원들과 위원들이 학자들과 함께 대만 전력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안전사고의 빈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파괴를 추궁했다. 그해 5월에는 국민당 소속 55명의 입법의원들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수상 美國華(Yu Kuo-hua)는 藏經

國(Chang Ching-kuo)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건설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 계획은 5년 동안 보류된 채 남아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국민당 소속 입법의원들의 결의안 발의는 사전에 藏의 승인을 얻었음이 분명하다. 왜 그가 그러한 행동을 선택했는지는 알기 힘들지만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그에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때는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다지 논쟁적인 주제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한 1986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는 매우 시사적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22.8%의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41.8%는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20.9%만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藏은 양보를 해야만 할 심각한 압력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정치개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정치인처럼 행동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藏의 동기에 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1986년에 발표된 정치개혁의 조치들이 정치적 반대와 사회적 저항운동의 수문을 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합은 탄생하였다. 1987년 4월 6일, 대만국립대학 교수인 藏國龍(Chang Kuo-long) 교수의 계획과 조정하에 환경보호에 관심있는 일단의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1986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사고를 추모하면서 貢寮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한 것이다. 약 200명이 참가하였다. 시위는 타이베이 소재 대만 전력회사 앞에서 항의 집회로 시작되었다. 그 후 그들은 버스편으로 貢寮로 이동하였다. 貢寮에서 교수들은 불교사원 앞에서 연설하였고, 대부분이 노년층인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군중들이 계속하여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건설이 예정된 부지로 행진하려 했을 때, 이들은 해안 고속도로상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그해 11월, 연합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연합은 초기부터 민주진보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야당의 邱義仁(Chu Yi-ren)은 다른 참여

단체들과 함께 연합의 결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많은 대학 교수들이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언급하였으며 민주진보당에 대해 매우 동조적이었다. 연합에 가입한 청년학생조직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대만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생각과 민주진보당에 대한 지지는 도시 지식인들과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가진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당은 지역사회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연합의 지역 지부들을 지배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념적 편향은 당연한 것이다. 출범 초기, 연합의 지도부와 연합에 참가한 교수, 학생들은 자신의 국가인 대만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애정과 관심은 그들이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아가 대만에 대해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합은 대만의 정치적 독립문제에 대해 사회의 비우호적인 반응과 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강령에서 연합은 다음을 선언하였다. ① 환경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다. 그것은 양도될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환경에 해로운 어떠한 법이나 정책에도 반대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 행해지는 개발계획에 대해 결정하고 감독할 권리도 함께 가진다. ② 인간은 그 생존을 자연환경에 의존해야만 한다.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호의존은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발전의 지도원리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한 보장이다. ③ 환경보호는 전체 인류의 책임이다. 국적, 인종, 종교, 정파의 구분없이 관련된 모든 개인과 집단은 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신조를 실행하기 위해, 연합은 그 자신을 '지식에 기반하고, 행동을 지향하며, 풀뿌리적인' 조직으로 규정하였다. '지식에 기반'한다는 것은 관련 분야의 교수와 과학자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또한 '행동을 지향'한다는 것과 '풀뿌리적'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창립 이후 십 년 동안 연합은 적극

적인 활동을 펴왔다. 연합의 활동은 호전적이고 역동적이었으며 정부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연합은 원자력 발전 저지로부터 골프장 건립 반대, 동부 해안에서의 시멘트 산업 개발 반대까지 매우 많은 환경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리고 환경보호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포럼과 강연을 지원하였다. 연합은 단식투쟁을 조직하고 건설현장에서 정부와 대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게 하고 청원하게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연합은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투쟁전술과 전략을 구사하였다. 과도하게 단순화시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년 간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시기는 대략 1987년에서 1990년 까지로, 연합은 교육 캠페인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신화'를 공격하였다. 몇 년 동안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대안의 경제발전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깨끗하고 안전하며, 값싼' 에너지원으로 선전해 왔다. 비록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건설이 대안 전력회사의 경영에 대한 비판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의 선전에 맞서, 연합은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 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만일의 사고는 대안의 인구집중과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연합의 주장이었다. 연합은 체르노빌 사고를 그 근거로서 자주 인용하였으며, 핵폐기물 처리와 핵폐기물로 인한 오염은 연합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시기에는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지역 지부의 창설이 중심 사업이었다. 연합에게는 아직 정부를 좀더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힘이 없었다.

다음 국면의 투쟁은 입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연합은 郝柏村(Hao Peitsun)의 빠른 공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취할 수도 없었다. 1991년 5월 5일, 연합은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두시위를 개최하였으며, 입법원과 대통령궁에 원자력 발전의 중단을 청원하였다. 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한 그 다음 날인 1991년 9월 26일, 貢寮 반핵 자조(自助) 협회 — 그 때는 그 이름을

대안 환경보호연합 북동지부로 개명한 후이다 —는 발전소 건설 부지에 천막 등을 설치하며, 장기간의 시위에 돌입하였다. 10월 3일, 경찰은 약속을 어기고 물리력으로 시위를 해산시키려 했으며, 경찰과 회원들 간에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한 명의 경찰이 죽었다.

이 사건은 '10월 3일 사건'이라 불린다. 대립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는 재빨리 두 가지 전면공격을 감행하였다. 첫째,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기소하였다. 17명의 貢寮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죄목으로 고발당했다. 1992년 이른 봄, 그들은 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중 林順源(Lin Hsun-yuan) 씨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상급법원으로의 항소가 시작되었다.

다시 5월에는, 1백여 명 이상의 대학교수들이 24시간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이는 23일 동안 지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국민당 소속 입법의원들이 대안 전력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을 폭로하였다. 그 후 그 익명의 폭로자가 연합의 일원임이 확인됨에 따라 그와 연합의 사무총장이 함께 기소되었다.

변화된 이념적 지형에 의해, 연합은 쉽게 투쟁의 3단계로 돌입했다. 연합은 1994년에서 199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을 지지한 입법의원 소환 운동과,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국민투표 실시 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생각은 이미 1989년에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몇 해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국민당의 지배하에 있는 입법원이 국민투표에 필요한 법률을 채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과, 연합은 이미 다른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국민투표 실시 운동을 별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1994년 5월 22일, 貢寮의 지방행정기관은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전체의 58.36%가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이 중 92.12%라는 압도적 다수가 이 지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였다.

1995년은 연합의 국제적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던 해였다. 물론 1995년

이전에도 연합은 외국인들에게 연합이 여는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예를 들면, 1988년에 독일 녹색당의 저명한 두 당원의 방문은 연합에게 대중성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은 확실히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편으로는 연합의 역량으로 인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연합은 국제적인 환경운동의 일부가 되었다. 1995년 5월, 프랑스 정부가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연합은 타이베이의 프랑스 사무소에서 반대시위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외무성이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유사한 예로 연합은 중국 정부에 의한 실험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연합은 아울러 프랑스와 중국산 상품 불매운동을 주도하였다.

1995년 9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핵 없는 아시아 포럼'에 대한 후원은 국제적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9월 3일에는 3만여 명이 포럼의 여러 행사 중 하나인 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 이후 3일 동안 세계 각국의 포럼 참가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건설 부지와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보았다. 또한 그들은 雅美(Yamis) 지역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반대해 온 핵폐기물 처리장을 감시하기 위해 蘭嶼(Lan-yu) 섬을 방문하였다. 포럼은 9월 6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1996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李登輝(Lee Tang hui)는 54%를 득표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입법원의 의석수에서도 그가 이끄는 국민당이 반수를 약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두 야당이 연합할 경우 큰 힘을 행사할 수는 있었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는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李는 정부에서도, 의회에서도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제4호기의 건설은 단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李登輝는 수상 지명에 대한 입법원의 권한의 한계를 주장하며 입법원과 대립했다. 그는 입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그의 부통령 運戰(Lien Chen)이 수상직을 계속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입법원과 정부, 부통령 간에 정치적 암투와 온갖 책략이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서 원자력 발전소 4호기 건설 중단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졌고 정부는 패배하였

다. 결의안 표결에서의 정부의 패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정치적 암투와 술책의 결과로서 해석될 수도 있고,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무리한 사업 시행의 대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일 뿐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 3. 세대간의 정의 문제

세대간의 정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대만 환경보호연합은 간단히 미래 세대들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만 가정하였다. 그러나 결코 권리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국 학문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정치철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때, 연합의 이러한 한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는지도 모른다.

위험하지만 단순하게 말한다면, 세 가지의 광범위한 문제가 서구에서의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시코라(Sikora)와 배리(Barry)가 언급한 것이다. 사회문제에는 큰 관심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또 그것의 해결을 위해 나서도록 설득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가<sup>1)</sup>라는 문제이다. 두번째 문제는, 미래에도 인류가 존재한다면, 자연자원의 사용이나 환경파괴 등과 같이 미래 인류에게 영향을 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져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미래 세대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과 그들과 우리 사이의 권력의 불균등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세번째 문제로는, 만약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다고 동의한다면,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이다.

여기서는 시론적 차원에서 그간의 논쟁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 토마스 슈워츠(Thomas Schwartz)와 그의 동료들이 펴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극단적인 것 같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가 가난해진다면, 이러

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원을 보존하기보다는 소비해버린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한 자원으로 인해 후세의 어느 누구도(또는 거의 모두가) 더 가난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가? 슈워츠의 설명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sup>2)</sup> 자연자원의 과도한 소비, 대기, 수질, 해양오염 문제는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슈워츠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 가지는 의무의 종류와 정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점은, 미래 세대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불확실성과 그들의 도덕적 입장, 그들과 우리 사이의 권력의 불균등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세대 간의 정의를 다룰 때, 배리(Barry)의 '동등한 기회로서의 정의' 개념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정의란, 미래 세대들이 가질 기회의 전체적인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만약 과도한 소비나 환경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인해, 어떤 기회가 상실된다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다른 기회들이 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sup>3)</sup> 다른 설득력 있는 사상 중에서도 특히 배리의 생각은, "다음 세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의에 의해 요구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과 부합한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선 권력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죽은 후 미래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한다면, 즉 우리가 죽은 후 우리들에 관한 평판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들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 지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들의 지식은 확실한 것처럼 보이며, 우리들의 의무는 의심할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핵폐기물이 수천년 동안 방사능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우

리를 의무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지식은 또한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논쟁거리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내년도의 한 죽음이 몇백만년 후의 수백만의 죽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의 정당화 문제이다. 몇 가지 허위적이고 사소한 이론적 논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연구경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의 동등하게 고귀하며 서로 다른 전통에서 나오는 중요한 지적 노력들을 살펴보자. 피터 라슬레(Peter Laslett),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정치철학 대가이며, 『철학, 정치 그리고 사회』(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라는 권위적인 간행물의 오랜 편집자이다. 그는 사회계약설에 기반하여 이론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세대간의 계약에 대한 사상과 세대내의 다른 집단간의 신뢰에 대한 사상을 존 로크의 풍부한 사상으로부터 도출하려 하고 있다. 그의 존 로크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연구에 매우 유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라슬레는 자신의 이론이 가설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만큼 주의깊었으며, 자신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그는 "나는 세대간의 계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게 고민해 왔다. 세대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다른 분석가라면 좀더 명확한 함의를 도출해내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사람들, 정치인들과 선동가들 사이에 세대간의 계약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조류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개념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입장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공격하는 법률가와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법정 계약'이나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계약 개념으로 볼 때, 라슬레가 사용하는 계약과 신뢰의 개념은 '법정에서 가까스로라도 방어 가능'한 것이 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통해 세대간의 계약 개념을 정의하려는 태도는 정의와 관련한 다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라슬레는 자연권적 입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

다. 5)

필자가 생각하기에, 라슬레의 공헌은 계약과 신뢰의 개념, 그리고 과정적 정의의 은유를 제안한 데 있다. 그의 은유는 생생하고 기술적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세대간의 삼중계약(*tricontract*)이라는 개념과 세대 내에서의 집단간 신뢰라는 개념은 너무 복잡하다. 그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난해했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의무를 다루기 위해 두 가지의 개별적인 개념이 필요한 것인가? 두 세대간에 발생하는 계약의 개념은 그가 언급하는 것만큼 필요없는 것일까?<sup>26)</sup>

이론의 출발점으로서 사회계약론을 사용하는 라슬레의 노력과 반대되는 것이 파핏(Parfit)의 입장이다. 그의 저작인 『이성과 인성』(*Reasons and Persons*)은 1984년에 출판되었다. 그의 저작은 간행 즉시 천재적 저작에 가까운 것이라는 대단한 평가를 받을 만큼 주목을 얻었다. 그것은 매우 애심적이며 또한 난해한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들의 가장 큰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때때로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자기 부정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앞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우리는 종종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비종교적인 도덕철학은 유망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안고 있는 새로운 주제라고 결론지었다.

세번째 관점은 텍사스 출신의 학자, 피시킨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한편으로는 동일성의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함정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성의 전통에 결부된 원칙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분명하고 수요가 있는 비체계이론'(*a robust and demanding form of unsystemic theory*)의 형성을 시도하였다. 그는 정당성 이론이 정의의 체계이론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당대의 문제는 당대에 해결하는 것이 좋은 법이다. "그러나 만일 정의의 체계가 자기 준거적 동의를 유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대를 관통하는 도덕적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사회계약을 보전할 수 있다." 미국 서부 출신의 실용주의 학자다운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던 그의 두 동료와 마찬가지로 그도 그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세대간의 정의에 관한 세 학자의 담론으로부터 판단하건대, 연합의 지도부가 미래 세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단순하기 그지없다. 라슬레가 그리는 사회계약의 개념과 파핏이 제기하는 비동일성 문제는 연합의 지도부에게는 낯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피시킨의 정당성 이론과 가깝게 서 있는지도 모른다. 연합은 환경에 대한 우려를 독재정부에 대한 반대 투쟁,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동일시했다. 이것을 볼 때, 연합의 지도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산된다면, 사람들은 현재이나 미래에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가정하는 것 같다.

#### 4. 결 론

환경보호와 관련된 대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단지 몇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대만 환경보호연합의 구성, 성장, 활동은 첫째, 권위적인 정부가 정치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겼고, 둘째, 이 정부가 정치적 반대와 사회운동에 대해 좀더 관대했다는 사실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대학 교수들이나 도시지역의 지식인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용기,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연합의 결성이 가능했던 것은 두 그룹이 그들의 노력을 하나로 모았을 때이다. 전자는 이상주의와 국가와의 일체감을 행동의 동기로 삼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동기로 삼았다. 후자는 주로 거만하고 무능한 정부하에서 그들이 얻은 고난과 무시의 경험이 그 주된 동기가 되었다. 몇 해 동안 교수들은 타이베이의 운동본부에서 지도적 역할을 떠맡았다. 그것은 어려운 싸움이었다. 연합은 고통스러운 후퇴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달콤한 성공을 달성하기도 했다.

넓게 볼 때, 연합의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 운동단체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야당인 민주진보당과의 연대의 심도, 대만의 독립운동이라는 명분이라 할 것이다. 연합은 야당과의 연대에서 힘을 이끌어내었으나, 야당 정치자금의 인질이 되어버렸다.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이 협력한다면 —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 이것은 연합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철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연합은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사상의 본류를 따라왔다. 연합은 정부에 대한 투쟁에 있어 비폭력을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연합은 심오한 생태철학을 따르지는 않았다. 한편에서 보자면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가 대단하였으므로, 그러한 목표는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지도적 입장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대학교수들의 사회적, 교육적 배경이 연합의 철학적 입장을 잘 설명해 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이고 오랜 기간을 서구에서 보냈다.

활용 가능한 자원의 부족과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지도부는 많은 것을 이룩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에 관해 연합이 좀더 명확한 담론과 사상을 갖게 된다면 그들의 업적을 더욱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주]

\* 이 글에서 다루어질 주제들은 필자가 참가하고 있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필자가 연구 기간 동안 각종 기법들과 선행 연구들을 필자의 동료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가장 큰 두 협력자, 陳俊宏(Chen Chun-hong) 씨와 鄭坤從(Cheng Yun-chong) 씨에게 감사를 전한다. 陳 씨는 세대간의 정의에 관한 논쟁에 있어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인 비동일성(*no-identity*)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鄭 씨는 환경보호연합과 반핵운동에 대한 석사논문을 얼마 전에 마쳤다. 그의 연구에서 鄭 씨는 연합이 관계하였던 모든 사업의 자세한 연대기를 작성하였다. 그러한 작업은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연합이 관계하였던 많은 사업에 대한 나의 해석은 그의 결론과는 매우 다르다. 賀寮(Gong-liao) 지역의 반핵운동에 관한 翁慧真(Ong Hui-jen) 씨와 張茂桂(Chang Mau-kuei) 교수의 연구는 그것이 주는 감동만큼이나 교훈적이다. 그들은 주민들이 정부 공직자들에 의해 겪었던 차별과 불의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어민들이 어떠한 설득과 자각의 과정을 거쳐 반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기술하였다.

- 1) R. I. Sikora and Brian Barry(eds.),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 2) Thomas Schwartz, "Obligations to Posterity," in Sikora and Barry(eds.),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78), pp. 3~13.
- 3) Brian Barry, "Circumstances of Justice and Future Generations," in *Ibid.*
- 4) Peter Laslett, "Is There a Generational Justice," in Peter Laslett and Jame Fishkin(eds.),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Six Se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44.
- 5) *Ibid.*, p. 4.
- 6) *Ibid.*, pp. 27~8.

## 한국의 인권과 시민사회

정통성과 이데올로기의 영향

데이비드 스탠베

### 1. 서 론

인권과 시민사회의 내용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 자체를 설명해야 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상황에 입각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권은 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지속되지만 반대로 제도에 의해서 침해되기도 한다.

데이비드 스탠베(David I. Steinberg) : 한국 아시아재단 대표(현), 미국 워싱턴 대학 한국학 교수 역임. 하버드대학, 런던대학에서 수학.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The Future of Burma*(1990), *The Republic of Korea : Economic Transformation and Social Change*(1989), "South Korea : Pluralizing Politics"(1995) 등이 있다. 여기에 실린 글은 그의 논문,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in Korea : The Influence of Orthodoxy and Ideology"의 일부를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이민아가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인권을 개념적으로 육체적(고문), 정신적, 그리고 조작적인(행위) 형태로부터 인격을 보호하고, 보호해 왔던 개인과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아마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맥락과는 다른 지적인 맥락에서 일어난 현재 아시아 지역의 인권 논의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인권을 규정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개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 공동체 — 어떤 지역적으로 규정된 범위 — 의 규모와 구성과 함께 공공적인 것으로 고려해야 하는가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부가 개인 또는 공공의 자유에 대한 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글은 인권과 시민사회의 발전이 역사적으로 권력행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권리개념과 통치제도 모두를 좌우하는 당대의 규범적인 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인권과 시민사회의 실현과 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의 규범적 요소는 인권과 시민사회의 발전과 실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왔는데, 그 두 가지 요소는 순응과 정통성이다. 이것은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 2. 사회적 힘으로서의 순응과 정통성

사회적 행동규범을 철저하게 신봉할 때 나오는 순응과 그것의 지적인 결과인 정통성은,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커다란 사회적 힘을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이 원인은 현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명백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경향들은 한국의 인권과 시민사회 개념의 타당성과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1,500년 동안 통일된 국가였다. 일본을 포함해서, 엄격한 의미의 서구적 봉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사회구조와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분권화된 권리와 권위를 가지는 봉건적 권력의 자치적인 중

심은 중앙집권적 통제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존재하지 못했다. 북유럽과 같은 반자치적인 무역도시도 없었다. 게다가 막스 베버의 용어에 따르자면, 한국은 중앙집권적 세습사회였다. 권력이 왕실에 개념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집중화되어 있었다.

사회의 강력한 위계적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권력을 인식하는 방식과 언어구조 및 언어용법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한국사회는 사회규범을 강화하는 선후배와 상하급의 구별을 발전시켜 왔다. 항상 변화를 겪긴 하지만, 위계사회에서 순응은 강력한 힘을 가지며, 이러한 측면은 한국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아마도, 순응을 조장하는 다른 명확한 압력이 있었으며 지금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일 것이다. 이러한 압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성, 문화, 민족성, 단일 언어, '가족'으로서 국가 등이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이 압력은 단일민족과 유사한 의미로 한국인들이 흔히 부르는 '혈통' 또는 '핏줄'을 포함한다. 소수민족이 없는 한국사회는 단일했다. 물론 자유선거로 독재가 무너질 때, 지역의 차이가 커다란 정치적 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 내부의 분권적인 경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과거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고 단일한 지식체계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검증했던 근대시대까지, 소수의 엘리트들은 통치규범에 대한 유교 원문의 해석을 놓고 당파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순응을 조장했다. 외부의 접근을 제한하는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도 이러한 과정에 한 가지 요소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우리주의'(We-isim)의 유형이 생겼다. 우리주의는 한국사회가 동질성을 회식시키는 좀더 강력하고 침투력이 강한(서구와 같은) 이웃이나 다른 영향들에 직면했을 때, 연속적이고 옹집력이 강한 독특한 한국문화와 국가 정체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sup>1)</sup> 이러한 집합성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에도 뚜렷이 나타난다.<sup>2)</sup> 이러한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당대의 사회적 가치가 확고하게 보전되는가 하면, 이에 따라 순응과 정통성의 신봉도 강화되었다.

법은 적어도 오늘날의 의미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

다. 전통적인 중국과 한국의 법개념은 서구에서 발전된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가치있고 도덕적인 모범에 의한 통치였다. 법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했지만 권리를 보호하지는 못했다. 인권은 보호되지 않았다. 고문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비록 실제로는 군주의 변덕은 그가 단 한 명의 절대자가 아니라 양반계급일 뿐이기 때문에 조절되기는 했지만 군주의 변덕은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단 한 명의 절대자는 북경에 있는 황제뿐이었다.

사회에는 비정통적인 견해를 국가구조의 전복으로 간주하는 정권의 정통성이 만연해 있었다. 반가톨릭 숙청은 이단적 사상과 비유교적인 것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반복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인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순응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북경에 한국인 대사를 보내서 한국에 서구과학을 들여오려 했던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통치를 위협하는 지적인 맥락은 없는 기술적인 것만으로 해석된다. 조선왕조 말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슬로건이 있었다. 그 슬로건은 동도서기(東道西器 : 동양의 정신, 서양의 기술)였다. 이것은 국가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구의 기술은 받아들이지만 통치와 삶에 대한 동양의 가치는 보존하고자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순하고 인위적인 이분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전통적 유교는 왕실내 권위집중화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광범위하고 조직화된 사적 무역의 존재는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한편에서는 가족과 씨족 사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에 제도적인 조직의 부족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가족-씨족의 맥락을 넘어서 효과적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물론 씨족들은 여러 당파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왕실정치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민사회적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들, 즉 정부의 권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거나 정부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지는 못했다. 씨족들은 씨족성원들을 과거시험에 불게 하기 위해 사학 또는 아카데미인 사당을 짓고 유지했다. 사당은 양반계층의 기반이 되었다. 사당은 씨족의 부속물로

보인다. 게다가 사당은 이단적 사상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당시의 지적 규범을 강화시켰다.

물론 한국 역사에서 정권에 대한 반란은 계속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노비반란(노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보다도 더 높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반란은 노비문서를 없애는 데 주력한 것이었다)이나 지나치게 가혹하고 폭압적이라 생각되는 지방 토호에 대항한 농민반란이었다. 물론 동학운동은 평등주의와 성평등을 옹호했고 그러므로 여러 측면에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동학운동의 시기까지 전통적인 통치형태는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반란의 결과는 유럽에서처럼, 집단들이 시민적 자유를 요구하거나 지배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사회적, 정치적 주변부에 있던 저항자들은 중앙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일제시기에는 자치단체의 발전이 효과적으로 제한되었다. 물론 35년의 기간 동안, 각각의 시기마다 억압의 강도가 달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것은 명백하며 특히 한국의 민족주의 또는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비록 사적인 단체들은 증가했지만, 그 단체들은 식민지 당국의 엄격한 감시하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단체들은 다원적인 성격의 중심부를 형성할 수 없었고 중앙권력은 단체의 활동을 자신들의 절대적 통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정치적 권리 또는 시민권이 성장하는 데 공헌하지 못했다.

해방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미군정(1945~48)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옹호했고 중앙화된 국가의 권위를 축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존재가 승인되었지만 미군정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좌익 정치집단은 파괴되었다. 어떠한 인권은, 일본 정권과 많이 연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에서보다 더 존중되었다. 또한 이승만과 그의 동료들은 강력한 반공주의와 반좌익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뿐만 아니라 소련에 대한 경제정책과 초기 냉전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좌익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고무되었고 이는 인권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왔다. 반공주의 정통성이 제1공화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남한에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으로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논의가 유교와 인권과 시민사회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공존하지 않았을 뿐이다. 헌팅턴의 말을 인용하면, “유교적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는 모순된 말이다. 그러나 유교사회 내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sup>3)</sup> 한국을 포함한 후기 유교사회는 다양한 사상들이 상호 충돌하고 혼합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 3. 정부 수립과 이데올로기 추구

남한의 이데올로기는 북한 정권의 자주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미숙한 관찰자들까지도 국제적이고 비교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남한이 의미 있는 정도로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순응성에 더하여) 이상적인 개념으로서 가르쳤지만 그것은 교실 밖의 주목할 만한 사건들에 의해 완전히 허리가 잘려버렸다. (그 당시 사회주의적이었던 인도보다 더 큰) 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 후원하의 높은 비율의 GNP, 재벌에 대한 압력, 이러한 모든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한 국가통제적 자본주의의 형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국가중심적 통제는 재벌의 권력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존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했다.

원칙적으로 신봉할 만한 것이 없고 지적으로 제공할 것이 불확실했던 정부는 반공주의를 이데올로기적 지주로 삼았다. 이것은 남한에서 기본적인 규정요소가 되었다. 일찍이 국가보안법이 구체화된 형태가 1948년 독립 후에 곧바로 공표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엄격한 이

데올로기적 기반으로 반공주의를 굳혔고, 이것은 남한이 전쟁국가로 남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초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 — 실질적으로는 정부 수립시 —에 만들어진 것이다.

민족적 반공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가는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공인된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감시하기 위해 확립되었다. 정보 네트워크는 심지어 1961년의 쿠데타 후에 생긴 중앙정보부의 형성 전에도 편재해 있었다. 비록 선거와 의무적 절차가 있었다는 걸치레가 외부세계에 소개되었지만, 1공화국(1948~60) 정권을 지지하는 데 이용된 정치적 통제와 힘의 성질에 대해 어떤 환상을 가진 한국인의 거의 없었다.

그러한 과정들은 일찍이 제1공화국 형성에 따라서 시작되었고, 엄격하게 정통적 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북한과 다른 공산국가의 경우를 생각나게 했다. 1949년 6월 5일에 국가는 좌익 동조자라고 생각되는 구성원들로 강제적인 반공조직인 보도연맹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약 3십만 명이 포함되었고, 그들은 전향서를 썼으며 자신들의 좌익적 시각을 철회했다. 그들은 사회에서 핵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일부는 북한의 전시 진행 과정에서 몰살되었다. 1949년 초에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모든 청년단체를 대한청년회로 통합했다. 정보부는 언론에 대해 북한과 관련된 엄격한 보도지침을 내렸고 언론이 루머, 선동적 논의 또는 보도, 그리고 우방에 대한 비판 등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를 해석하는 데 거의 완벽한 여지를 줄 정도로 모호했다. 유물론적 시각으로 한국역사를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급진주의, 종속이론, 그리고 다른 접근들로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 등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원칙적 수준은 그것의 선택적인 강화를 이끌었다. 물론 법원이 나중에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국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법으로 구속된 개인들 중 통계적으로 아주 낮은 비율만이(1.2%) 간첩활동으로 고소되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사실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구속자의 99% 이상이 반국가적 조직(북한)에 이로운 표현을

사용하거나 북한을 찬양 또는 고무했다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1993년부터 1995년 9월까지, 860건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었고 600명이 구속되고 21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46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강요된 정통성이 작동하는 것은 권력의 성격이 획일적일 때 명백하게 드러난다. 민주적 정부체제의 견제와 균형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안적 세력의 원천에 대한 균형 혹은 비정부 부문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원주의는 오랜 기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헌법적 권리 를 지키는 데 무력했고, 단지 1987년 후에야 사법적 독립이 근소하게나마 뚜렷해졌다. 입법부는 당국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정부의 이해관계와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는 투표유형에 대해 검토해 보면, 1공화국 이후로 1980년대 중반 정도까지 야당이 일반적으로 지방이 아니라 도시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이 낳은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지방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통제를 도시에서는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중앙정부가 사회내의 모든 제도적 신용을 통제했던 박정희 시대에 현저히 드러난다. 이 때 농민들이 특히 의존적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역시 쌀 수확물의 많은 양을 사들였음은 물론이다.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 시기에 국가는 단지 25%만이 도시였고, 통제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정치적 자유화의 시기에 국가는 75%가 도시였다. 도시를 통제하는 정부능력이 없어짐으로써 이전보다 더 자치권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집단들이 승인되었고, 1987년 6월 29일의 정치적 자유화의 시기에는, 심지어 이전 정부가 통제했던 전문적 조직들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국가정책을 반대했다.

정치적 자유화는 사회의 민주적 형식에 대해 비판적인,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다. 그러나 사회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정통성과 순응을 요구하는 정신적 측면이 중요하게 남아 있었다. 또한 이 힘은 국가통제가 완화되었을 때조차도 사회의 방향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 4. 6공화국(1988년~)

1987년 봄에 민중은 전두환 대통령이 다가올 대통령 지명을 독재적,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데 대항하여 거리에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민중의 성장력이 확인된 1987년의 봄은 대통령 직선제, 노조 설립의 자유, 인권의 증대, 정권의 광범위한 개방성 등을 포함한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끝이 났다. 일어난 사회적 동요는 정권의 독재에 대해 대항한 학생들과 성장하는 중간계급과 시민사회조직이 연대한, 인상적인 일이었다. 이는 사회내에 다원주의가 설립되었으며 이전의 한국역사에 비해서 시민사회가 앞으로 더욱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임을 증명한 것이었다.

한국의 역사를 괴롭혀 왔던 권력의 개인화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당의 대통령 지명에서 서로 경쟁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의 이행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최다득표수를 차지한 노태우의 승리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에서 노태우 정부는 대체적으로 6공화국으로 불리지 못했다. 오히려 전두환 시대와의 빛과 연속성 때문에 5 1/2 공화국이라 불렸다.

정치적 국면이 자유화 이전 시기와 연속적이었던 간에, 인권분야가 이전 시기와 연속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자유화 이후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지속시켰고, 사실상 그 법에 의해 구속된 숫자는 이전 시기보다도 증가했다. 반(反)북한 이데올로기(즉 반공주의)의 정통성에 의해서 작가들, 특히 시인과 예술가들이 계속 투옥되었다. 이는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공산주의 체계의 세계적 붕괴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것이었다.

물론 안기부의 역할은 명백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들의 준사법적 기능도 제한되었다. 그러나 안기부의 감시 메커니즘은 계속되었고,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에 여러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보안법도 1948년 이후로 많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데올로기와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고안물이었기 때문에 지속되었다. 그 법에 대한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비판이 있어 왔다. 국제사

면위원회, 인권감시단, 유엔 인권위원회와 다른 조직들뿐 아니라 인권보고서 모두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도망범인인도 조약 체결을 꺼려한 것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조약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발된 한국인을 한국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철폐는 북한과 남한 학생운동권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북한의 외교정책과 남한내 인권자유화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하는 경향을 놓았다. 이것은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개혁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오명으로 작용했고, 정통성과 순응의 힘을 강화시켰다. 그 법을 폐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남한의 사회, 경제체제를 비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영삼 정부(1993~97)는 비록 김 대통령 자신이 반대자였고, 가택 감금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영역에서는 이전의 정부와 같은 정책을 지속시켰다. 물론 그의 초기 개혁들은 주요한 것이었다. 군부의 정치개입을 효과적으로 막았고, 고위관리들의 재산을 공개했으며 실명제를 도입했다.

1996년 8월 중순에 학생조직의 연합체인 한총련이 연세대에서 통일을 위한 대규모 폭력시위를 이끌면서 주요한 위기가 일어났다. 시위는 수일 동안 계속되었고, 한 경찰관이 죽었으며 많은 재산이 파괴되었다. 진압경찰은 마침내 학생들이 있던 캠퍼스의 건물을 습격했고, 수백명이 관련법으로, 일부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최종적으로 438명의 학생이 관련법으로, 38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다.

정통성은 모든 측면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엄격한 반정부적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북한의 현실이 명백히 알려졌고 국내 공론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그 결과로 일어난 폭력을 지지받지 못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학생조직을 '반국가적' 단체로 규정하여 불법화했고, 학생조직의 돈줄을 조사했다. 나중에 경찰이 전복적(북한옹호적) 성격의 자료와 쇠파이프 같은 공격무기들을 찾아내기 위해 다른 대학의 캠퍼스를 수색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선동가와 북한사상의 침투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요구했다. 학생

들은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군대는 군대 내에 약 6,000명의 '좌익'적인 군인이 있으며 1,600명이 '핵심'임을 주장했다. 언론은 "검사가 학생들의 이데올로기적 확신이 북한의 지도자인 고 김일성의 주체 또는 자주 이데올로기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시험되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사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도입을 요청했다. 그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학생과 정부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서로 반대이긴 하지만 양쪽 모두에 정통성의 이데올로기가 놀랄 만큼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각각의 정치적 진영에 대한 순응의 필요는 이러한 특성이 아직까지도 남한에서 결정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정통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한 옹호적인 시각을 철회하기를 거부하는 정치범들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1995년 광복절 특사로, 세계 최장기수가 43년이 지나서야 풀려났다.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범들은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시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었다.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틀에 순응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치 자유화 기간 동안에 공표된 정부의 선언문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물론 권리가 확대되었지만, 어떤 집단은 아직도 여기에서 제외된다. 노동분야가 그러한데, 이 노동분야는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는 노동분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낮은 노동비용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중간계급의 지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그러므로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대립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며 정부가 좌익이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지 정부가 보호하는 노동단체만이 인정되었고, 정치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노동자들의 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덧붙여 지식인들이 조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교사들의 조합 건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권리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제한들에 대해 ILO, 유엔, OECD, AFL-CIO와 여러 인권조직들이

항의했다. 1996년 4월에 김영삼 대통령은 OECD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 분야에서의 개혁을 고려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부적 노동문제와 더불어, 한국은 한국인들이 더 이상 있고 싶어하지 않는 비천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연수생'과 '직업훈련생' 등으로 합법적으로 고용해 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받았고 일부는 비인간적 대우에 저항했다. 현재 한국에는 5만 명 이상의 불법 노동자들이 있고,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 5. 결 론: 한국사회와 순응은 어디로?

한국의 정치적 자유화는 크게 진전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제도적 변화가 명백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불완전하고 불균등하겠지만, 진보는 계속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한국에서 훌륭히 형성된 것 같다. 물론 아직까지는 재벌과 매체가 시민社会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원주의적인 성격의 공적인 관심이 성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반국가'(북한)적 문제이거나 국가보안법과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쟁점을 옹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신에 시민社会의 활동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고무적인 현상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로부터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권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자유화 당시의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 상태이다. 노조의 형성과 노동자의 여러 가지 활동이 아직도 엄격한 정부의 통제에 묶여 있다. 정치적 검열도 남아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투명성이 부족한 정부의 간접적인 영향이다. 현재 지역감정은 정치적 요소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 지역감정이 얼마나 오래 정치적 요소로 남아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

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인권이나 시민사회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정부는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간섭하고자 한다. 기업은 국가의 규정과 통제에 저항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정부가 간섭하고 시민이 그 간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며, 때에 따라서는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사회간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보는 태도이다. 실제로, 사회적 병리가 명백히 나타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대중적 항의가 일곤 한다.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수준마다 서로 다르다. 이 쟁점에 대한 담론은 이 담론이 좀더 개방적이 되고 사회가 그 과정에 더욱 폭넓게 참여함에 따라서 현재보다 더 중대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물론 순응성은 긍정적인 요소도 가진다. 정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는 위계적 사회구조, 군대의 명령체계, 그리고 순응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필요나 승인 등의 복합적인 혼합이 포함된다. 그것은 아마도 새마을 주택으로 설명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온 마을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대부가 제공되었고 보상과 사회적 처벌이 혼재하여 나타났다.

순응에 대한 심리적 필요는 아직까지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체계에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현저히 남아 있으며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비록 한국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이 역사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높은 위치와 한국의 잠재적인 군사력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지정학적인 불안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한 태도는 정부가 공인한 지구화 정책과도 상충하는 것이다. 순응은 문화적 민족주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것, 공동의 유산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응은 지구화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결과인 지적인 이질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몇몇 논자에 의하면, 다양한 시각과 진보적인 의견을 인정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것은 기술적 발견과 진전이 만들어낸 작품

이다. 순응과 정통성을 장려하는 것은 국제적 경쟁력과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후기 유교사회로서, 한국이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며 다양성을 장려할 수 없다고 논의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렸다는 점이 증명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내의 이질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는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한국이 국가적 목표로서 완수할 필요가 있는 자유를 위하여 책임있게 국가에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 [주]

- 1) 서구에서는 일본사회를 자기억제적이며 동질적인 문화의 최종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은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한국과 중국 소수민족이며 문화적으로 상이한 아이누족과 초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하위계급인 부하쿠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동질적 사회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한국에도 백정이라는 하위계급이 있었지만,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에 소멸했다.
- 2)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평판의 문제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관계된' 것이다. 한국은 유교적 전통에 기반해서 명예훼손을 가족의 체면이 깎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Kyu Ho Youm, *Press Law in South Korea* (Ames: University of Iowa Press, 1996), p. 118을 볼 것.
- 3) Quoted in Tu Weiming (ed.), *Confucian Tradition in East Asian Modernity :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 190.

## 동티모르 인권상황과 독립운동의 전망

### 조용환

나는 눈물 속에서 자라났고 눈물 속에서 살고 있으며 눈물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태어날 때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 19세의 동티모르 청년

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부담과 실망, 비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민중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티모르 민중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미래는 희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변화를 약속해 왔습니다. 미래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범죄를 물리치는 승리의 순간을 가져올 것입니다.

— 자나나 구스마오

조용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장 · 동티모르연대모임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집행위원(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논문으로 “국제적 인권보호제도와 이용가능성”, “세계인권회의 참가보고서”, “국제법에 비추어본 제3자 개입규정의 효력”, “5·18특별법과 전 · 노 재판의 문제점” 등이 있다.

### 1. 서 론

인도네시아와 호주, 파푸아뉴기니 사이의 남태평양에 떠 있는 티모르(Timor) 섬의 오른쪽 절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0년 넘게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티모르의 가톨릭 지도자 벨로(Belo) 주교와 모베레민족저항평의회(National Council of Maubere Resistance ; CNRM)의 외교대표 호세 라모스-호르타(Jose Ramos-Horta)에게 올해 노벨평화상이 수여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준 것 같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시기가 문제일 뿐 이들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있을 만큼 동티모르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동티모르가 냉전을 배경으로 약소민족을 노예상태에 빠뜨린 강대국 패권정치의 상징적인 사례로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인권과 평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열망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티모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국제사회로부터 폐쇄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한편 우리의 시야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동떨어진 채 편협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동티모르 문제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 문제가 가진 국제적 맥락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 2. 동티모르의 역사

동티모르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인종과 언어, 종교 및 문화의 모든 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섬은 고대로부터 말레이 반도와 호주 및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와 멜라네시아 제도들 사이의 통로가 되어

왔다. 근세 이후에는 포르투갈을 통하여 라틴 계통의 가톨릭 문화가 수입되었으며 아랍과 중국 상인들의 왕래를 통하여 이슬람과 중국의 종교 및 문화에 노출되었다. 1975년 인도네시아의 침공 당시 70~80%의 주민이 정령신앙(*animism*)을 가지고 있었으며 20%가 가톨릭을 믿고 있었고 3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었는데 테툼(*tetum*)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동티모르는 16세기에 특산물인 백단향(*sandalwood*)을 거래하는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하여 서구에 알려진 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서티모르는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다. 서티모르는 1949년 인도네시아로 독립하였으나 동티모르는 1974년까지 포르투갈이 관할권을 가지는 '비자치 지역', 즉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1960년 12월 15일 유엔 총회 결의 1542호(XV)).

1974년 포르투갈의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지자 동티모르에서는 프레틸린(Fretelin: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과 UDT(티모르민주동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벌어졌다. 주로 교육받은 젊은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프레틸린은 농촌개발과 토지개혁, 대중교육과 빠른 독립을 내세워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반면 보수적인 엘리트와 토지소유자, 전통적 지배계급으로 구성된 UDT는 기득권의 상실을 염려하여 포르투갈과 연합을 주장하였다. 지지는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네시아와 병합을 주장하는 동티모르인민민주협회(Apodeti)도 있었다.

1965년 미국의 사주를 받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5십만 명 이상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부는 1974년 이후 동티모르에 대한 영토확장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군사활동으로 정세가 불안해지는 가운데 1975년 8월 UDT의 우파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프레틸린은 11월 28일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2월 7일, 3만 명의 인도네시아 육해공군은 전면 침략을 시작하였고 1976년 6월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되었다.

### 3.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 1) 식민지 개발론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병으로 동티모르인들이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 투자한 액수와 설립한 학교 및 의료기관의 수, 도로 포장률과 상거래 허가 건수 등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통계는 사람들의 고통과 열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주민의 대다수가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는데, 1975년 침공 이후 계속된 전쟁으로 쌀을 비롯한 곡물과 커피 등 농작물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가축들이 몰살당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한편 동티모르인들의 문맹률은 50% 이상이며 영아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1,000명당 106명을 기록할 만큼 보건의료 상황도 열악하다. 주택사정도 마찬가지여서 사람이 제대로 살 만한 것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업도 심각하다. 인도네시아의 가자마다(Gadjah Mada) 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1987년에 대학졸업자를 포함한 취업희망자 4,756명 가운데 3.4%인 166명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지금까지 약 15만 명을 동티모르로 이주시키면서 공직과 상업을 이주민들이 독점함으로써 동티모르인들의 실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땅과 취업기회를 우선적으로 차지하면서 군부와 함께 착취계급으로 등장하고 있다.

포르투갈어와 테툼어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판차실라(*pancasila*)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5개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을 부정하는 자, 곧 공산주의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티모르인들은 이제 80% 이상이 가톨릭을 믿게 되었고 이주민들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

시아군과 동티모르인 사이의 저항전선이 한편으로는 동티모르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종갈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종교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군당국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은 지난 20년 동안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산림에 불을 지르고 제초제를 광범위하게 뿌려서 많은 지역이 황폐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군은 또 주민들을 강제로 집단이주시켜 주민들이 떠난 지역과 새로 이주한 지역 모두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자원개발도 부작용을 놓고 있다. 군부와 연계된 피티 바타라 인드라 그룹(PT Batara Indra Group) 산하의 기업들은 동티모르의 주요 생산물인 커피, 백단향, 대리석, 석탕산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당국이 소유하던 토지를 모두 차지하였다. 살해되거나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의 땅을 군당국과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등 외지인의 토지소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2) 대량학살과 공포로 유지하는 식민통치

침략과 착취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고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군이 저지른 집단학살이다. 많은 조사결과는 1975년 인도네시아가 침략한 때부터 대규모 군사작전이 종결된 1979년까지 최소한 2십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는 데 이론이 없다. 인구비율로 볼 때 2차대전 후 가장 참혹한 집단학살이라고 평가되는 이 결과는 침공 후 1년 만이 지난 1977년 3월까지도 프레틸린이 동티모르 인구의 3분의 2를 포용하고 있었을 만큼 치열하게 전개된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동티모르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군의 숫자는 1만 7천 명 내지 3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주둔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을 설명해 준다. 1994년 7월 동티모르를 방문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느디아예(Bacre Waly Ndiaye)는 ‘공포 분

위기’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인권단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양상은 철저한 감시와 자의적인 체포, 구금, 체계적인 고문과 강간,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불공정한 재판과 양심수의 구금 등이다. 독립군과 연계를 가지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의심을 받아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

## 3) 딜리(Dili) 학살

1980년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군은 여러 차례 대량학살을 저질렀다. 예를 들면, 1983년 8월 인도네시아 군대는 비케케(Viqueque) 시의 크라스(Kraras) 마을에서 200여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인도네시아 군은 약 1,000명을 체포하여 30여 명을 즉결처분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1년 11월 12일 수도 딜리에서 벌어진 학살은 마침 현장에 있던 외국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출한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전세계에 알려졌다.

당시 기대를 모았던 포르투갈 의원단의 방문이 취소된 가운데 10월 28일 인도네시아 군에 살해된 세바스티아오 고메스(Sebastiao Gomes)를 추모하기 위하여 산타 크루즈 묘지에 모인 군중들이 평화시위를 벌이자 인도네시아 군은 이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였다.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사위원회는 50명 정도가 사망하고 실종자와 부상자가 91명씩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CNRM은 10살의 어린이를 포함한 271명의 사망자와 6살의 어린이를 포함한 250명의 실종자 명단을 밝혀내고 부상자를 382명으로 발표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유엔 특별보고관 느디아예는 11월 12일 예정된 시위를 미리 알고 있던 보안군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사전에 계획된 군사작전으로 학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150 내지 270명이 사망한 것 같면서 242명 이상이 실종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1명의 시위가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가혹한 형을 선고하여 보복하였다.

#### 4. 독립운동과 인권의 쟁점들

##### 1)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

인도네시아의 침공 이후 프레텔린의 군사조직인 팔린티(Falintil : 동티모르민족해방군)은 무장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군의 무차별 학살과 폭격, 초토화 작전으로 1979년경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투항하여 대규모 무장투쟁은 거의 소멸하였다. 여기서 살아 남은 독립군은 1981년 3월 사령관이 된 자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지금까지 무장투쟁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자나나 구스마오는 1988년 12월 그 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UDT와 화해하고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모베레민족저항평의회(CNRM)를 조직하였다. CNRM은 모든 민족주의 조직과 정당을 포괄한 연립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정파나 이념을 대표하지 않는다. CNRM은 팔린티의 사령관, 집행위원장, 비밀전선대표로 구성되며 외교를 담당하는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를 두고 있는데 호세 라모스 호르타가 맡고 있다.

##### 2) 투쟁의 변화

CNRM은 군사작전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전략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상징인 팔린티는 200명 정도로 유지하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저항운동과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적 압력을 동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본 가자마다 대학교 연구팀이 “군대의 압력 때문에 심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식민주의의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겠다는 절대적인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청년학생들의 운동은 민중의 저항의식을 고취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호세 라모스-호르타가 중심이 된 외교활동도 성과를 얻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방해로 1982년 이후 동티모르가 국제사회의 의제

에서 사라지게 된 후 각국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연대운동을 조직하여 각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면서 특별보고관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외무장관 회담과 국내외 동티모르인들의 회담을 주선하는 등 점차 개입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 3) 쟁점과 제안들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책은 자결권 행사를 통하여 찾을 수밖에 없지만 당장 일어나는 인권유린을 억제하는 것도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유엔의 특별보고관들과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수많은 권고를 제시해 왔는데 공통된 내용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인권규약과 고문방지조약 등을 비준하고 그에 맞추어 인권을 보장할 것,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수사과정의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보장할 것, 학살과 실종 등 중대한 인권유린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포로가 되어 20년 징역형을 받은 자나나 구스마오의 석방도 시급한 과제이다.

CNRM은 자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동티모르인들의 주민투표(*referendum*)를 통하여 독립 혹은 인도네시아와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CNRM은 3단계 평화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이익과 체면을 존중하고 궁극적으로 화해하여 선린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제안으로 평가받는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단계 : 신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인도적 단계’로서 2년 이내. 동티모르 안에서 군사활동 중지 ; 6개월 안에 인도네시아군을 1,000명으로 축소 ; 탱크, 헬리콥터, 전투기, 장거리포를 포함한 중화기 철거 ;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50% 축소 ; UNICEF, UNDP, WHO, FAO 등 유엔 전문기관 상주 ; 전면적인 인구조사 ; 군대의 언론통제 폐지 ; 정치활동의 자유 허용 ; 포르투갈어 교육과 문화기관 설립 ; 유엔 사무총장의 지역 대표자 선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 제 2 단계 : '자치기간'으로 5년 내지 10년. 모든 정당 합법화; 유럽연합의 사절단 주재; 유엔이 지원·감시하고 동티모르인들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지역의회 선거; 의회가 5년 임기 총독 선출; 외국과 무역관계를 수립, 투자, 토지소유권, 재산관계 및 출입국에 관한 법률 제정; 인도네시아 군의 철수;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유엔이 훈련하여 총독이 지휘하는 경찰을 가짐;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추가 감축;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정상화.
- 제 3 단계 : 자결권 행사. 모든 당사자들이 원활 때에 즉시 유엔 감시 하에 주민투표 실시하여 독립 또는 인도네시아와 통합 여부 결정.

## 5. 국제사회와 동티모르

### 1) 국제사회의 공모와 이해관계

동티모르 문제는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일어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974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순으로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되었다. 유럽에서는 좌익군부의 혁명으로 포르투갈의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졌고 그 여파로 앙골라와 모잠비크가 독립하여 좌익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티모르 섬 북쪽 해협은 미국의 핵잠수함들이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로서 티모르 섬 북쪽 해협을 이용하는 데 군사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티모르 남쪽 대륙붕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눈독을 들인 호주에게 민족주의적인 프레탈린은 곧 공산주의 세력으로 보였다. 더구나 비동맹권의 지도국으로 남아시아 최대의 정치, 경제, 군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서방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였다.

이런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1974년 호주 수상 휘틀러로부터 동티모르를 병합하는 데 동의를 얻은 인도네시아는 1995년 12월 5일 포드 미국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하고 떠난 직후 침략을 시작하

였다. 이 때 사용된 무기의 90%가 미국이 공급한 것이었으며 미국은 그 후에도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무기를 원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밖에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진상을 은폐하는데 협조해 왔다. 군수산업이 취약하여 혼자만의 힘으로는 동티모르를 병합할 능력이 없던 인도네시아의 배경에는 이러한 국제적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 2) 민족자결권과 반인도적 전쟁 범죄

국제법의 기본원칙은 민족자결권의 보장이다.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한 국제법규는 민족자결권을 신성한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 아직 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으로 인정받은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가 병합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군대의 철수와 동티모르의 자결권 존중을 요구한 두 차례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여덟 차례의 총회 결의는 여전히 법적 속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침공 후 인도네시아 군대가 저지른 학살과 인권유린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서 모든 나라는 그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다.

### 3) 인도네시아의 국내정치적 맥락

동티모르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다. 수하르토 정권이 처음으로 야당의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생운동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점차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동티모르의 독립이 다른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정권 내부의 두려움도 있는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동티모르를 지배함으로써 군사훈련과 승진, 그리고 경제적 착취의 이익을 얻는 부패한 군부의 이해관계이다.

수하르토 사후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권력투쟁과 혼란은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물론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동티모르 문제 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큰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컨대, 수하르토 사후에 민중의 불만이 제일 먼저 폭발할 곳이 바로 동티모르인데 이 때 인도네시아 군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의 뜻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 6.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그리고 한국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의 고난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것이 고통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물론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냉전을 배경으로 한 강대국의 패권정치에 휘말려 노예상황으로 전락한 것 역시 낯설지 않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부패한 군사정권의 인권유린과 이에 저항하는 끈질긴 투쟁 역시 닮았다. 동티모르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적 원칙을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면서 찢어진 사회를 재건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호주, 인도네시아의 패권정치 속에서 독립과 안정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두는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들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과연 민주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채워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좌절하고 말 것인가. 이 또한 민주화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와 반성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무시할 수 없는 이해관계와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당사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발전을 향한 갈림길에서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와 그 경험을 나누고 역량에 걸맞은 기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결국 동티모르 문제는 우리와 우리나라가 어떤 도덕적 가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독재정권의 범죄를 방조하며 약소민족의 고통에 눈감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민족자결권을 존중하고 인권과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열쇠가 동티모르 문제에 달려 있다.

### [참고문헌]

- Aditjondro, Geroge J., *East Timor : An Indonesian Intellectual Speaks Out* (ACFOA, 1994).
- Amnesty International, *East Timor : Twenty Years of Violations*, AI INDEX : ASA 21/33/95.
- Amnesty International, *Power and Impunity : Human Rights under the New Order*, 1994.
- A Paz e Possivel em Timor Leste, *East Timor after Santa Cruz*, 1993.
- 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 *East Timor Searching for Peace*, September 1996.
- Asia-Pacific Conference on East Timor (APCET), *Report and Proceedings*, May 31~June 5, 1994, Philippines.
- Asia Watch, *Remembering History in East Timor : The Trial of Xanana Gusmao and a Follow-up to the Dili Massacre*, April 1993.
- Chomsky, Noam, *Power & Prospects — Reflections on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Allen & Unwin, 1996), pp. 169~221.
- Chomsky, Noam, *The Chomsky Reader*, ed. by James Peck (Pantheon Books, 1987), pp. 303~312.
- Chomsky, Noam and Edward S. Herman, *The Washington Connection and Third World Fascism*, 임채정 역, 『미국대외정책론』(일월서각, 1985), pp. 162~239 (동티모르), 240~255(인도네시아).
- CIIR / IPJET, *International Law and the Question of East Timor*, 1995.
- CNRM, *East Timor : Timor Oriental* (briefing documents, 1993).

Department of the Parliamentary Library, "A Pebble in Indonesia's Shoe : Recent Developments in East Timor" (Research Paper No. 8, 1995, Australia).

East Timor Human Rights Centre, *Continu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Timor*, 16 October 1996, Ref : SR 1/96.

East Timor Relief Association, *A Tragedy of Justice : Xanana's Defence*, ed. by Peter Slezak, 1996.

European Campaign Against Arms Trade, *Stop Arming Indonesia*, 1994.

Gusmao, Xanana, *Statement to the Plenary of the Inter-Parliamentary Conference on East Timor*, Lisbon, 31 May ~ 2 June 1995.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se Concerning East Timor*, General List, No. 84 (30 June 1995).

Mubyarto et al., *East Timor : The Impact of Integration* (Gadjah Mada Report, trans. & pub. by The Indonesia Resources and Information Program, 1991).

Oporto University, *East Timor : Land of Hope*, 1990.

Ramos-Horta, Jose, *FUNU : The Unfinished Saga of East Timor* (Red Sea Press, 1987).

Ramos-Horta, Jose, "Scenarios and Solutions : East Timorese and Indonesian Perspectives," Sydney Conference 제출논문.

Report by the Special Rapporteur, Mr. Bacre Waly Ndiaye, on his mission to Indonesia and East Timor from 3 to 13 July 1994, UN ECOSOC: E/CN.4/1995/61/Add.1 (1 November 1994).

Robinson, Geoffrey, "East Timor after Suharto : Lessons from 1965" (Paper for the conference 'East Timor : Its Future in the Asia Pacific', Sydney, 21 ~ 24 June 1996 ('Sydney Conference')).

*The New Internalist*, No. 253 (March 1994).

동티모르연대모임, 《동티모르 소식지 준비》, 1, 2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동티모르(East Timor) :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 (1993).

양난주, "우리는 동티모르 학살을 막기 위해 전투기를 부쉈다." 《사회평론 길》, 1996년 9월호.

이성훈, "산타크루즈 대학살과 동티모르의 독립투쟁," 《월간 말》, 1994년 1월호.

인권운동사랑방, "동티모르 — 고난받는 민족, 공모하는 국제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3호(역사비평사, 1994).

조용환, "이제는 동티모르 민족의 편," 《한겨레 21》 제15호(1994. 6. 30).

## 체험으로 본 동아시아의 인권

### 서 승

나는 3년 전에 일본으로 온 후로 중국, 대만, 오키나와 등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가 부쩍 늘어났다. 이것은 그 때의 견문을 통해서 요즈음 논의가 한창인 '아시아적 인권'과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생각해 본 글이다.<sup>1)</sup>

#### 1. '히토니 야사시' 일본의 인권

지난해에 나는 오사카 교원조합의 초청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일본인 소학교 여선생이 찾아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

서승(徐勝)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강사(현). 일본 교토에서 출생. 동경교육대학 졸.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수료. 1971년 국가보안법으로 투옥, 무기형을 선고. 90년 출소. 93년 캘리포니아대학 객원연구원. 저서로 《옥중 19년》, 《첫발을 내딛을 때》가 있다.

다. 그는 소학교 6학년 담임으로 역사시간에 일제의 조선지배에 대해 설명하던 중, 황민화 정책이 알기 쉽게 이해되도록 마침 그 반에 있었던 재일동포 학생에게, “가네다(金田), 너의 참된 이름은 김(金)인데, 너희 할아버지 때 강제로 가네다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야”하고 일러주었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선생님이 나의 진짜 이름은 김이라고 하셨는데 정말이야?”하고 물었나 보다. 이튿날 가네다의 아버지가 낮빛을 밝히며 학교에 쫓아와 선생님에게 “모든 학우들의 앞에서 우리 아이가 조선인임을 알렸다”고 노발대발하더니, 일본공산당계 교원조합원 선생님 몇몇과 함께 “일본이름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선사람이라는 프라이버시를 폭로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사카 법무국(일본 법무성의 지방출장소)에 인권구제신청을 냈다. 그 여선생은 법무국에서 오라 가라 하니, 고초를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말썽을 만든 자”라는 눈총을 교직원들로부터 받았다.

얼핏 보기에도 이 인권구제신청은 이름 선택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인권의 원칙에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자기의 참된 이름이 불리는 것을 거북스런 모욕으로 느낀 학생 아버지의 자학적이고 전도된 의식은, 일본 땅에서 조선인이 차별받고 살기에 생겨난 것이다. 유독 재일동포만이 500만 해외동포 가운데 외국성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름마저 빼앗아 쓰지 못하게 한 일제와 그러한 조선인 차별정책을 답습해 온 일본 정부와 사회의 인권침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사람의 이름을 빼앗은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깨닫지 못하고, 조선사람을 조선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 비밀을 덮어주고 일본사람으로 쳐주는 것이 차별에 반대하는 길이라 생각하는 일부 ‘진보적 교사’의 인권의식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네다상, 대은 정말로 조선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하는 그들의 찬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관료적 사보타주’가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조선인이 감옥에 몇 명이나 투옥되어 어떠한 탄압을 받았나를 조사하려 해도, 일본 형무소 당국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구실로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동경의 어느 대

학의 백년사 편찬위원인 모교수가, 황군병사로서 싸울 것을 강요당한 조선인 학도병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학적부의 열람을 대학사무국에 신청했으나, 역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내세워 방해받았다. 재한 피폭자 문제, 강제연행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모두 일본 정부가 자료를 거머쥐고 인권을 내세우며 은폐를 해왔기에 진상조사에 엄청난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부유해지고 조국 한국의 기민(棄民) 정책이 계속되자, 요즈음 재일동포 사이에서는, “일본에 태어났으니 조국은 일본이다”라든지, “대대로 일본에 사는데 국정참정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재일(在日)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히로시마의 한 재일동포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방적으로 박탈한 일본 국적을 즉시 회복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같이 살자고 할 때는 언제고 헤어지자고 할 때는 언제나”는 억울한 심정에서 볼 때, 제멋대로 천황의 적자(赤子)라 했다가 아무런 배상도 없이 ‘제3국인’으로 내동댕이친 행사야 실로 가증스럽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회복하라는 요구는 강제로 식민지화된 근본적 사연을 잊는 일이다. 몰락한 주인에게서 놓여난 노예가 주인이 강성해지자 다시 노예로 삼아 달라 해결하는 초라한 모습일 뿐 국적 선택의 자유나 권리 회복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나는 인권이란 이렇게도 왜소한 것인가 싶어 몹시 속이 상한다. 시장에서 콩나물값이 오르면 화가 나는데 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는 데에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다. 우리가 주변의 인권문제에 많이 민감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더 큰 인권유린 구조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 은폐시키며 회화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듦다. ‘히토니 야사시’(사람에게 자상하다, 또는 부드럽다)라는 말은 작년 무라야마 내각의 정치표어였으며, 일본에서 유행어가 되었다. 이처럼 남이 나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기만 기대하고 주변 사람과의 마찰을 되도록 피하면서 좋게 넘어가고자 하지만, 진작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큰 문제는 안 보려 한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의 안일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만이 자꾸자꾸 생겨나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다.

요즈음 혈액 제제(製劑)로 인한 약해(藥害) 에이즈 감염문제가 일본을 뒤흔들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제약회사의 전현직 사장 3명과 후생성 과장이 구속되었다. 미도리주지(녹십자)라는 제약회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벌고자 비가열 혈액제제를 계속 팔아 2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4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회사는 일본의 혈액제제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전신인 '일본 블러드 뱅크(Blood Bank)'가 탄생한 것은 1950년이었다. 창립멤버는 약 3천 명의 조선인, 중국인, 몽골인 등을 생체실험하여 학살한 악명 높은 731 부대의 간부들이었다. 그들은 전범자로서 또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지른 자로서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생체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주는 것과 그 당시 터진 6·25 전쟁에서 부상한 미군병사에게 수혈하기 위한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면죄받았다.<sup>2)</sup> 이번 사건은 잔인무도한 인체실험을 자행한 자를 단죄하지 않은 데서 나온 일종의 인과응보겠지만, 가공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을 학살한 731 부대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번 사건을 보려 하는 움직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작년에 일본 전체를 떠나 한 옴 진리교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살인, 독가스, 마약, 무기제조, 납치, 폭행 등 온갖 범죄를 서슴지 않은 그들의 비인간성을 입을 모아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일본인 변호사는 “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일본 사람 전부가 옴 천황교였지 않았는가”고 말했다. 천황을 신으로 떠받드는 마인드 컨트롤로 국민들을 세뇌하고, 독가스, 생체실험, 마약이나 위폐의 유포, 약탈, 방화, 강간, 무차별 학살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온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는 그 규모에서 엄청난 차가 있을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옴과 똑같은 ‘광기의 집단’이었다. 옴 진리교의 비도덕성, 비인간성에 이의를 다는 일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옴 천황교’에 대한 향수는 더욱 짙어져 가고만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정치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내가 존경하는 하와이의 선교사 란 후지요시(Ron Hujiyoshi)는 올해 2

월 9일에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가 재일동포나 일본의 빈민, 장애인들과 깊은 우정을 맺게 된 것은 20여 년 전, 민중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기 위해 오사카의 빈민가인 가마가사키에 옮겨가 노동자가 된 때부터이다. 그후 그는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차별, 동화정책을 비판하고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지문날인의 거부로 여러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쇼와 천황의 사망으로 사면을 받았다. 천황이 은혜로 베푸는 사면 따위를 받을 사람도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에 돌아가 있었던 그는 사면을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15일에 지문날인의 거부자 가운데 오로지 혼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1만 엔의 별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판결에 따르지 않기 위해, 또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하루 2천 엔의 노역형을 택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문날인이었다. 우선 가진 돈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또 치약, 칫솔, 휴지 따위의 일용품을 지급할 때마다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그는 “지문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하며 항변하자, 여덟 명의 간수들이 “여기는 일본이다. 여기는 오사카 구치소다. 네 멋대로 할텐가”하면서 달려들어 손발을 붙잡고 팔을 비틀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다. 일반 관공서에서는 도장을 찍는 대신 사인을 할 수도 있지만, 형무소에서는 아직도 지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단 당시 만에 수염이 까칠까칠 돌아난 그를 구치소 정문에서 맞이하던들은 이야기는, 한국의 감옥에서 살았던 나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독방에 갇혔고, 노역수이면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었던 월요일까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방안에서 사흘 내내 정좌만을 하고 있어야 했다. 일본식으로 끓어앉으면 너무나 다리가 아프고 견딜 수 없어 방안을 서성거리거나 양식 변기에 걸터앉으면 금방 간수가 쫓아와 홋통을 쳐, 고문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픔과 굶욕을 느껴야 했다. 휴일에는 운동시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가져온 성경과 서적을 보기 위해 신청해 봐야 출소날짜 이후에야 볼 수 있다며 아예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다. 한국의 감옥에서도 신입자에게는 심심풀이로 읽으라며 관

의 책을 빌려주거나 하다못해 믿지도 않는 성경책을 갖다 주는데, 그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의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당시 동안의 구치소 생활에서 얻은 교훈을 이렇게 말했다.

“일본 구치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굴복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독방의 건물과 시스템 모두 수용자를 비인간화한다. 지루한 일과가 계속되고 중범자도 아닌 나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고 자극이 부족하므로 정신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밤새 불을 켜놓기에 엎드려 자야만 하는데, 고문과 마찬가지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상해 있었다.”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자처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인권의 국제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처럼 큰 문제들이 있다.

나는 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정치와 인권’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인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다”고 했다. 편견이 없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역사의 기억이 풍화되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를 뿐 아니라 아예 아무런 느낌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한 학생은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 리포트를 쓰기까지 자신이 일본사람이라고 의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민족이니 국적이니 모두 쓸데없다”라고 썼다.

요즈음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지구촌 시대’, ‘국민국가의 붕괴’, ‘지구시민사회의 출현’ 따위의 유행어가 넘치고 있다. 많은 일본사람들이 민족이니 국경이니 하는 울타리에서 자유로운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국가가 사멸하고 모두가 한 울타리에서 평화롭게 잘 사는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을 일본인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는 이 젊은이들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비자도 필요없고 엔의 위력으로 굽실굽실 대접을 받으니 마음대로 세계를 넘나들며 굳이 일본사람임을 느끼지 않아

도 된다. 그냥 어디에서도 통하는 세계인인 것이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일본이나 미국의 국경은 얼마나 엄청나게 높고 험할까. 로마인은 로마인이면서도 세계인이었듯이, 이제 일본인도 이미 자신을 세계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에 선 것이다. 국적이니 민족이니 하는 케케묵은 소리는 집어치운다는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아시아 사람들에게 진 엄청난 일본의 죄과마저 함께 훨훨 털어버리고 절대자유의 세계인이 되고자 서두르고 있다.

## 2. 오키나와

작년 12월 오키나와 인권협회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오키나와 땅을 밟았다. 수개월 전에 미 해병 세 명이 소학교 아동을 윤간한 사건으로 오키나와는 커다란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다.

오키나와의 수도인 나하에 내려서면 아시아의 냄새가 물씬 난다. 시장에 가면 한국이나 중국의 시장처럼 돼지머리가 즐비하고 사람들은 좀 느슨하고 낯가림을 하지 않는다. 나하에서 유명한 향토주막에 가보았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대고 비좁아서 서성대니까, 두 사람이 앉는 의자에 끼여 앉자며 자리를 권했다. 누가 주문한 것인가에 상관않고 안주와 술이 오고갔다. 일본 본토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허물없는 모습들이었다. 마치 서울 뒷골목의 대폿집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오고가고 술자리가 무르익어 갔다. 내가 한국사람임을 알자 그 중 한 사람이, “조선사람도 중국사람도 오키나와사람도 야마토(일본)에게 당해 왔으니까…” 하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1879년, 일본의 명치시대 초기에 오키나와는 식민지로 일본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한 40년 앞서 19세기 말부터 오키나와에서 ‘황민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본디의 이름과 중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

을 세 개씩이나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천황숭배와 '국어'(일본어) 상용을 강요받았다. 오키나와말을 쓰면 '방언札'(方言札)이라는 막지를 주고, 석장 모이면 벌을 서도록 했다. 그러니 조선과 대만에서의 '황민화 정책'은 모두 오키나와에서 실험을 거친 것이다. 제2차 대전이 터지자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사람들에게 "이 성전(聖戰) 이야기로 오키나와인이 참 일본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몸 바쳐 싸워라"라고 했다. 그러나 전쟁 막바지에 이르자 "알아듣지 못하는 오키나와 사투리를 쓰는 자는 간첩으로 친다"는 군의 명령 때문에 무고한 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아났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주 '오키나와의 희생'이라는 말을 한다. 냉전이 시작되고,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통치를 받았다. 1972년, '핵이 없고 일본 본토와 비슷하게'라는 조건으로 일본땅으로 복귀됐다. 그러나 20년 이상 지난 오늘날 오키나와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은 본토사람의 1인당 평균소득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군기지 문제다. 오키나와 섬을 비롯해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지는 오키나와 현의 면적은 2,260 평방킬로미터로 1,840 평방킬로미터의 제주도보다 넓지만, 오키나와 섬의 면적은 1,100 평방킬로미터 정도로 제주도의 60% 정도의 크기이고 일본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곳에 주일 미군기지 면적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섬 면적의 20%에 이르는 7,380만 평이 미군 용지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미군기지 공여지 7,368만 평보다 넓으니,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나를 잘 알 수 있다.

미군 병사들은 오키나와 땅에서 살인, 강간, 강도, 폭행을 술하게 저질러 왔다. 그것은 72년의 '본토 복귀' 이후 약 5,000건에 이르고 있다. 불도저와 총칼에 의한 토지의 강제수용, 군사훈련이나 군사기지에 기인하는 환경오염, 기지공해, 자연파괴, 훈련사고 등으로, 오키나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아 왔다.

오키나와 사람의 심정은 복잡하다. 6·25 전쟁과 월남전쟁 때 미군 폭격기와 해병대의 출동기지로 이용되어 본의 아니게 전쟁의 공범자가 되었다는 자괴감이 있다. 미국에 대한 공포와 증오도 크지만, 오키나와에만 희생을 강요해 온 일본을 더욱 못 참아 한다. 일본사람이 아니면서도 일

본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일본사람이라 하면서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참 일본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몇 번이나 했다가 좌절만 한 오키나와사람들은 지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냐, 일본 안에서의 '자립'이냐 하는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오키나와, 냉전의 희생자 오키나와, 이곳의 인권문제는 대만이나 한국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 3. 대만

대만은 내년에 '2·28 사건' 50주년을 맞이한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을 통해 대만을 일본에 빼앗겼다.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 고초를 겪은 대만 민중은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했지만, 해방의 기쁨은 이내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 갔다. 대만 접수를 위해 도착한 陳儀 장군이 이끄는 제70군은 부패 타락한 국민당 군대 가운데서도 규율이 문란하고 장비가 열악한 지방군이었다. 대륙에서 건너온 접수군이나 국민당 관리들은 일제의 재산이나 기업을 접수하고, 정치, 행정, 경제의 주요 자리를 독차지하며 "일본에 의해 '노예화 교육'을 받은 대만 동포"들 위에 지배자로 군림했다. 사회질서는 크게 문란해지고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대륙에서 온 외성인(外省人)에 대한 원한은 깊어갔다.

해방 후 1년 만이 지난 1947년 2월 27일, 타이베이역 근처에서 암담배를 팔고 있던 아주머니를 전매국의 단속계원이 구타하자 이에 격분해서 들고 일어선 군중에게 발포한 것이 '2·28 사건'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28일, 살인자를 처벌하라고 행정장관 공관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기관총을 퍼붓자, 항의봉기는 온 섬에 번져 나갔다. 출동 요청을 받아 뒤늦게 도착한 2개 사단의 진압군은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해 정부 발표만으로도 2만 8천 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다.

나는 이전부터 대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해방 후에는 반공 군사독재 통치가 계속되었다.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성장도 있었다. 현재는 분단과 통일, 민주사회와 학립이라는 우리와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1995년 3월 29일 나는 처음으로 대만을 찾아갔다. '대만지구 정치수난 인호조회'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당시 일본의 텔레비전에 보도된 '대만 1950년대 백색테러'의 현장을 직접 가보고 싶었다. 타이베이시 중심에서 얼마 멀지 않은 六張犁 공동묘지로 향했다. 산길 시장터에서 차로 한 15분 올라간 산비탈에 장의사가 있고, 그 뒤에 반경 20미터 정도의 부채꼴의 비탈에 높이 30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 가량의 초라한 묘비가 한 50개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묘비에는 '민국 0년 0월'이라는 사망 연도와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옆에 꽂혀 있는 조그마한 깃발에는 분류번호가 적혀 있었다. A-1이라는 깃발 아래 제일 먼저 발견된 徐慶蘭의 무덤이 있었다. 자꾸 꿈속에 나타나서 찾아줄 것을 호소하는 형의 무덤을 30년 간이나 찾아 해맨 끝에 한 출소정치범이 집념으로 찾아낸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1993년에 도합 201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정치수난인호조회'의 노력으로 당시 공소장도 판결문도 없이 군사재판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1,011명의 정치범의 명단이 확인되었다. '50년대 백색테러'의 진실의 일부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각 언론매체가 머릿기사로 다루었다. 2·28 사건에 이어 대만 현대사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낸 이 사건의 발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내륙에서 쫓겨난 蔣介石이 미국의 《중국백서》에서 '부패하고 무능함'을 지적받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다. 마지막 의지처인 대만의 발밑을 굳히기 위해 계엄령과 각종 정치탄압법을 선포하여 사람을 잡아들이던 중에 6·25가 터졌다. 미국이 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하며 '蔣介石 비호'로 정책을 바꾸자 그는 되살아났고 대대적인 탄압은 거침없이 시작되었다.

이 결과 1950년대에 4천 명 가량이 총살되고 1만 명 가량이 투옥되었다

고 한다.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여 잡아죽인 건데, 당시 대만 정보기관의 기록에는 공산당원이 800명 가량이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설사 그들 전부가 '빨갱이'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도 변호인도 방청인도 판결문도 없는 재판으로 이들을 총살형에 처한 것은 국민당 정부의 악법에 비추어보더라도 불법적인 만행이다.

같은 해 6월에 다시 대만에 갔다. 高雄의 영웅회관(퇴역 군인클럽)에서 열린 대만성 문건위원회가 실시하는 '50년대 안전'(백색테러를 관변에서 부르는 이름)의 희생자와 처형된 가족에 대한 녹취조사를 참관하기 위해서였다.

자연발생적이고 폭발적이었던 2·28과 달리 '50년대 안전'은, 정보기관이 '사상성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잡아들이고 죽인 사건이라서 아직도 정부차원에서의 조사, 명예회복,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빨갱이를 죽인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대만성 의회는 '50년대 안전'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유는 "역사에서 공백의 페이지나 떨어져 나간 페이지를 남길 수 없다"는, 기록과 역사를 중시하는 중국다운 발상이었다.

#### 4. 아시아적 인권과 아시아의 인권

올해 10월 30일, 천안문 사건의 리더이던 王丹이 정부전복음모죄로 기소되어 중급인민법정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구미 여러 나라의 비난을 예상하여, 전날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어느 국가도 자기 나라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 중국의 내정에 외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중국정부는 "인권은 국가주권 범위에 있는 문제다. 국제법의 주체는 주권국가이며 유엔은 국가조직을 넘지 못한다. … 각 나라에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사회적 제도, 문화전통, 발전수준이 있으므로 인권의 인식과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하나의 모델만을 옳다고 밀어붙일 수 없다"(《人民日報》, 1992. 10. 18)고 밝혔다. 이른바 '아시아적 인권'

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권의 특수성 혹은 지역성의 입장과 '인권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입장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다. 판정승이 인권의 보편성에 돌아갈 추세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보편성의 대표선수라 한다면,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아시아적 인권'의 대표선수들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아시아 인권현장'의 제정이나 '아시아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창된 지 오래지만 오늘날까지 실현을 보지 못한 큰 요인의 하나가 이 두 가지 입장의 대립에 있다.

동아시아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 이와 같이 오늘날의 여러 상황을 인권의 보편성이나 특수성의 개념에 따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서 어떠한 인권문제가 형성되어 왔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요즘 '노예조약', '강제노동 폐지조약', '인신매매 금지조약' 등의 국제인권법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큰 인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아시아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재의 인권문제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있기에 과거의 문제가 오늘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산되지 못한 국가폭력이 오늘날의 인권이념이나 인권기구의 정당성 부여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의 인권문제의 참된 특수성은 '아시아적 인권'론이 주장하는 문화적 특수성, 발전단계론, 정치적 안정(자유권의 제한) 우선론, 민족자결론 등의 논리에 있다기보다는, 역사 속에서의 인권유린이 바로잡아지지 않은 채 오늘에 다다른 '아시아의 인권'의 성격에 있다고 하겠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끈질긴 추궁은 <신들러 리스트>나 <쇼아>와 같은 영상매체들이 유대인 학살이 저질러진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만들어지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군센 의지도 필요하지만, 독일사람처럼 '시효없는 속죄'의 뜻으로 과거의 인간유린의 죄값을 청산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주 이에 비교되지만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려 하거나, 마지못해 '유감'이나 '사과'를 말할 경우에도 말장난으로 얼버무리려 한다. 마음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했으니, 이제 됐지" 하는 식이다.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이노구치 교수나 수상을 역임한 신진당의 하타 쓰토무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에서는 비교적 나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유는 "그냥 놔두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고립되니, 국익을 위해 사과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사죄는 사죄가 아니라, 사과를 했다는 '알리바이 만들기'이며 '면죄의 요구'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근대 이후 서구열강에 이은 일본의 침탈로 여러 민족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는 패망했으나, 냉전의 시작으로 일본은 과거의 죄를 청산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루스벨트의 '중국대국화', 트루먼의 '강력하고 통일된 중국' 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민주화된 蔣介石의 중국정부를 미국의 우방으로 삼아 일제의 부활을 견제하자는 것 이었다. 그러나 국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통치능력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중국공산당의 우세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일본 군국주의 해체를 중지하고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축으로 삼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일본의 전범들을 면죄, 석방하고 재군비를 추진하는 등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와 민주화를 위한 '전후개혁'을 중단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며 아시아에 대한 속죄와 화해에 등을 돌리고 배상책임마저도 회피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해 온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일본 해제모니는 '자유진영'의 독재정권을 비호, 육성하면서 국가테러리즘이라는 엄청난 인권유린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근대 이후 형성된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라는 범죄구조를 온존시켜 왔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는 해방 후 5만~7만 명의 희생자를 낸 1948년의 '제주 4·3 민중항쟁'을 비롯해서 6·25를 전후해 약 백만 명의 '양민학살'

이 저질러졌다.<sup>3)</sup> 이후 4·19에서 '광주 민주화항쟁'에 이르기까지도 국가 테러리즘이 맹위를 떨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분단으로 말미암아 구시대형의 냉전이 사라지지 않아,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성폭행, 고문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많은 정치범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이제는 세계의 어디에도 없는, 일제의 유산인 사상전향제도가 오늘날까지 살아 있으며, '비전향 정치범'들은 30~40년에 이르는 옥고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이 들 냉전하 국가테러리즘의 희생자들은 '광주 민주화항쟁', '거창 양민학살 사건', '2·28 사건'<sup>4)</sup>과 같이 일부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받은 경우도 있으나, '제주 4·3 사건'이나 대만 '50년대 백색테러'와 같이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아직 지하에 묻힌 채 잊혀져 가고 있다.

내년 2월 타이베이에서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것은 냉전시대에 저질러진 국가테러리즘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포스트 냉전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냉전과 그 인간적 희생의 의미를 재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한국, 대만, 오키나와, 일본 등의 학자, 변호사, 예술가, 인권운동가, 국가테러리즘의 희생자 약 200명이 모일 것이다. 이 회의는 동아시아의 국가테러리즘에 조명을 던져 줄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인권'이라는 시각을 더욱 더 다듬어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인권의 대립은 오늘날의 인권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의 수용, 해석을 둘러싼 대립이다. 이 대립을 넘어서기 위한 몇 가지 방법으로, 첫째, '아시아적 인권'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적 인권'이라는 말은 70년대 유신독재시절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 국가권력의 폭력을 합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둘째는 인권의 보편성을 밀어붙이기 위해 '인권외교'라는 외부 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강압적인 인권외교의 발동은 '인권'이 강대국의 혜개모니 관철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는 아시아에서 역사적 대립구도를 해소하고 지역통합을 지향하며, 당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의 다분히 위선적인 인권개념을 인정할 수도 없고, 오늘날 까지 한국에서 계속되는 국가테러리즘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나는 이 대립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역사의 마이너스의 유산을 짊어진 '아시아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역사적인 인권문제의 해결, 즉 일본 혜개모니와 그 공범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참된 아시아의 인권도 평화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 [주]

- 1) '인권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인권'에 관한 본격적인 논고는 졸고, "개발과 인권 — 동북아시아의 경우," 『리츠메이칸 국제지역연구』, 7호, 1995(일문)를 참조.
- 2) "지금도 이어지는 악마의 계보," 『네트워크 교토』, 1996년 8월호.
- 3) 김삼웅, 『해방 후 양민학살사』(가림기획, 1996), p. 6.
- 4) 1987년에 '2·28 화평일 축진회'가 결성되어 2·28 희생자의 추도위령비의 건립 등을 추진했다. 1988년에 제엄령 해제를 전후하여 報禁(미디어의 검열 허가 제도), 黨禁(정치결사 금지법) 등, 여러 억압제도가 제거되었다. 1990년에는 대만의 각지에서 2·28 기념행사를 하고, 1991년에는 李登輝 총통이 행정원에 2·28 사건의 조사연구와 유족의 위로 등을 지시하여, 그 다음해 행정원은 〈2·28 사건 조사보고〉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2월 28일에는, 타이베이의 신공원에서 2·28 기념비의 제막식이 거행되어 李登輝 총통이, ① 정부의 사죄, ② 피해자의 명예회복, ③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상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 정기구독안내

- 정기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계간 사상》에 첨부된 우편엽서를 기입하신 후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774-9891~3)
- 정기구독료는,  
1년분 : 12,000원, 2년분 : 24,000원입니다.  
(\* 은행지로를 이용하실 분에게는 지로용지를 보내드리며, 우편대체를 이용하실 분은 우체국의 대체용지를 이용해 대체계좌번호 012732-31-1091750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계간 사상

1996년 겨울호(제 8 권 제 4 호 통권 31호)

1989년 4월 8일 정기간행물등록 (등록번호 바-1230)

발행인: 김준엽

편집인: 김경원

발행일: 1996년 12월 10일

발행처: 사회과학원

⑨ 100-09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6번지  
전화 / 774-9891~3, FAX / 774-9894

제작·공급: 나남출판

⑨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39  
지훈빌딩 501호  
전화 / 3473-8535~7, FAX / 3473-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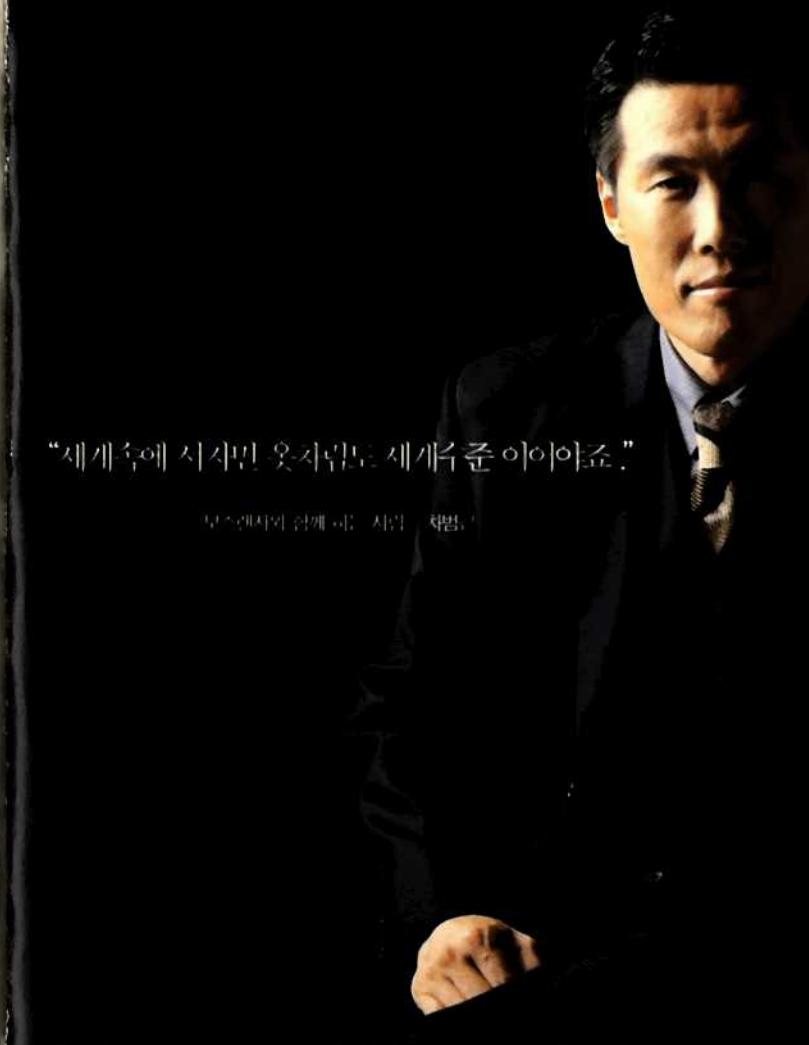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사회과학원 1996

값 4,000원

“세계수준에 시사민족자립도 세계수준이어야죠.”

보스렌자와 함께하는 시대의 차별화



축구인 차범근씨. 이제는 축구선수가 아니라 세계정상의 스포츠인 외교사절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는 세계적인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잦은 만큼

자신의 갑갑시도 세계수준이 되어야 힘을 끼닫고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진짜 세계수준이 되려면 우선 내면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그는 세상 누구보다 좋은 친구라 여기는 아내가

세계수준에 손색없는 웃이리며 관해준 보스렌자를 즐겨 입는다고 한다.

완성된 남자의 편안한 기품 - 보스렌자



**VOSLENZA**  
보스렌자